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서관장서

건설업동태조사지침

197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



022692

목 차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기준	3
다. 조사대상	3
라. 조사사항	5
마. 조사방법	6
바. 조사시 유의사항	6
2. 면접 및 실사	9
가. 면접	9
나. 실사	10
다. 유고사업체 처리	11
3. 조사항목의 해설 및 기입요령	13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3
나. 항목별 해설 및 기입요령	14
4. 검토 및 제출	35
가. 검토	35
나. 제출	35
부록 1. 산업분류 (건설업용)	39
2. 풍종분류 해설	46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건설공사의 월별도급상황을 빌주자 및 공종별로 파악하고 사용액 주요원재료 및 교통상황등 건설활동을 월별로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조사기준:

이 조사의 기준일은 매월 말일이며 기준기간은 해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한다.

다. 조사대상:

본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0. 3. 13.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분류 5. 건설업」이며 조사대상사업체는 건설부장관 명의 업체중 조사 목적에 따라 선정된 161개의 건설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건설업의 정의

- (1) 계약 및 수수료 아래 또는 자기계정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

는 것을 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미기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체 단위도 포함되어 시공자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함은

(가)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하는 공작물

및 이들의 부대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해체, 제거 및 이
설공사

(나) 토지, 항로, 유로 등의 개량 혹은 조성공사.

(다) 전기공사, 관공사 등의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혹은 이설공
사를 등을 말한다.

(2) 건설업과 농산업간의 관계

(가) 기획, 조사, 측량, 설계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8.404 (토목,
건축 및 기술서비스업)에 분류된다.

(나)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관리업 등을
〔소분류 831 부동산업〕에 분류된다.

라) 조사사항;

1) 조사표 구성

본 조사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액란과 원재료, 종업원수, 및 급여액란으로 구성되었고 보조내용으로 (전반원) 이상의 수주공사 내역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조사항목;

가) 계약액;

월별공사계약액을 공종별, 말주자별로 구분한다.
공종별은 이를 건축, 토목, 기타 공사로 구분하고 건축
토목공사는 다시 각 주요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파악하며
말주자는 공공기관, 민간, 외국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공기
관과 민간은 이를 다시 세분하여 구분조사한다.

나) 원재료;

건설공사에는 많은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
는 건설공사의 주요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흙, 등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물량으로 파악하여 이를 전월평균과
월중수입, 월중사용,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등으로 구분 조사

토록 한다.

나) 종업원수 및 급여액;

일반종업원수와는 별도로 기능공, 노무자관을 설치하여
월중연인원수 및 자불고임을 조사토록 한것이 타조사와
구분된다.

라) 기 타;

대상사업체의 월중수주공사중 1천만원 이상되는 공사의
전명, 계약액, 일주기관명등을 조사항으로써 대체로공사의
공종별 분류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다.

사업체의 노무자 동원일수를 파악하여 노무자의 평균인
원파악 및 가동현황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파. 조사방법;

면접과 의한 타계식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마. 조사시 유의사항;

전설압통체조사는 당원이 처음 시도하는 월별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특색과 편안성이 있으므로 본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조사의 특색

가) 대상사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주도사업체인 점이 특색이다.

나) 사업체가, 거주지이므로 항목별로 응답자가 여러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것이 특색이다.

다) 대주도인 관계로 월별 결산기가 늦어 조사기일까지 응답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것이 특색이다.

2) 본 조사의 한계성:

가) 통증타사업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제공되는 자료의 세부자료 출출을 우려하므로 조사표 작성에 한계성이 많다.

나) 결산기 지연으로 인한 정확한 자료수집이 한계성이 많다.

다) 조직의 대형화로 응답자와의 유대관계 및 신속성이 어렵다.

3) 조사에 임하는 조사원의 차세

가) 조사원은 본 조사의 취지를 먼저 숙지하고 응답자 및 재천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비밀누설의 우려를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

나) 응답자 및 예비응답자와의 유대관계를 문득히 힘으로써

응답률을이나 기피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

나) 결산기 지역등으로 인한 자료제공 지역을 항목별로 사전에
파악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제공될 자료에 대한 기밀과 파
악을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라) 조사된 내용을 전월과 비교, 검토하여 식한 격차 (20%)

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확실히 파악하여 조사표 촉동판
에 기재함으로써 월별조사의 브듯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응답자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하겠다는 다
음을 갖도록 한다.

2. 면접 및 설사

가. 면 접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 응답자와 면접할 때 응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전준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후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2) 조사표를 제출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성의있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기재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업수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안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편관할 때 또는 여러 부과를 순방해야 할 경우 각 항목의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일과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할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고 재방문의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4) 직접 면접에 의해 조사표를 기재할 경우 항목간의 연관성

（10-）
④ 전월과의 관계등을 미리 감안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조사표 기록부를 휴대 방문하였을시 타사업체의 실적이 누설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4. 실 사

- 1)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
의 기입을 완료도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
이 지연될 경우 2차, 3차, 재방문하여 12월 이전까지는
조사표 기입을 완료해야 한다.
- 2) 조사원은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표 작성시 원재료의 함수관계등 연관된 부분을 사전검토
하고 고용급여등에서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 그 사유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 3) 결산지연등으로 조사표기입이 지연될 경우 응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월실적등을 감안하여 가결산에 의한 잡정조사
표를 작성 제출하되 추후 확정조사표를 끝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액은 징정치가 나올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과 힘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등
과 명칭 변경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응답불응사업체

가) 1차적으로 재차 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힘
조를 구한후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 과·부정을 방문
힘조를 구한다.

나) 그래도 힘조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지도원에게 보
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지부에 즉
면지원요청도록 한다.

다) 건설협회 시·도지부의 종용에도 불응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예정자, 협회종용일,
기타사항) 즉시 증명에 보고한다.

2)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
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매우적인 철수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등 내부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원은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 조사표 적 오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지도원은 조사원의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중앙에 그 사유를 우선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사업체

급당한 사업체중 폐업한 사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체 관할 시·도전경협회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조사표 적오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제출한다.

- 1) 소재불명, 이전, 전업·명칭변경의 경우 대상업체가 소재불명이 되었거나 이전, 전업·명칭변경했을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적오란에 상세히 기재 보고하며 사업체 주적이 불가능하면 관할협회에 문의하여 그 변경된 사항을 적오란에 기재 보고한다.

3. 조사항목 해설 및 기입요령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 보다도 조사
원이 조사표 각 항목의 성의 및 기입요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 및 항목별 기입요령을 숙지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1)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란에 뒷도록 캐全社会이 작성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1, 2, 3, - - - 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며 특히 4와 6, 0과 6, 3과 5, 7과 9등
을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 기입한다.
- 3) 각 수량, 금액에 단위 미만은 4자5임 하여야 한다.
- 4) 오기 사항을 청정교차 할 때 두줄로 횡선을 그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하되 청색 또는 주색잉크를 사용해서
는 안된다.

이 각 항목에서 전불과 적심한 차이가 나타날 때는 그 사유를

서로란에 창세록 기입한다.

6)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편리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할 경우 조사항목에 대한 성의를 충분히 이愧시키고 완료된 조사표는 재검토해야 한다.

4. 항목별 해설 및 기입요령

1) 사업체 번호

사업체별로 중앙에서 미리 지정된 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특히 사업체 발생으로 번호순서가 틀리더라도 중앙에서 정정지시가 있거나 전까지는 지정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액

개별 조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항목으로 응찰중에 있거나 사용자측에서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은 해당이 없으며 계약이 이루어 지기전 공사의 성질상 일부 책상을 우선하였더라도 계약액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3) 계약변경

공사계약은 시공중에도 설계변경 공기연장 원재료비의 등기 또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희의등의 원인으로 계약내용이 변 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이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액의 증가 또는 추가계약시 :

별개 공사의 계약액과 같이 해당란에 증가 또는 추가계약을 기입하고 적으란 ① 계약변경내용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워한다.

예시 ; 1월에 기 계약된 중앙정부발주의 공무·문교용 건축공사액이 1억원이었을 경우 3월에 설계변경으로 3천만원이 증가되었을 때 그 증가금액을 3월조사표 계약 액란에 해당 부문인 1. 건축공사, 04. 공무·문교용 란을 따라 그 공공기관의 ① 중앙정부란에 기재하고 적으란에는 “ 1-04-1-0 계약변경으로 1월분 계약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 증가(추가계약)”이라 기입 한다.

(3) 계약액의 감소 또는 해약시

이 경우에 계약액란에는 기워하지 말고 적으 항목의 계약변경내용란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워한다.

예시 ; 1. 1월에 1억원사인 정부발주 공무·문교용 건축공사가 계약되어 공사가 진행중 3월에 계약변경으로 3천만원이 감소되었을 때 “,-04-I-① 계약변경으로 1월계약액 1억원중 3천만원 감소”라 기입한다.

ii). 전기예시중 그 공사가 3월에 해약되었을 때 “,-04-I-① 계약변경으로 1월계약액 1억원중 1천만원 상당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해약되었음”이라 기입한다.

a) 건축

건축공사는 공종에 따라 주택, 사무실, 첨포, 주박시설, 오락장, 공장, 창고, 관공서, 학교, 병원,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공종분류는 별첨하는 공종분류 해설란을 참조하여 구분 기입한다.

b) 토목

- (1) 차선, 차수 등 // 개공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사표 작성시
공사명에 구애되지 말고 공사 성질에 따라 별첨하는 공
종 분류해설란을 충분히 참고하여 해당란에 구분 기입한다.
- (2) 도로 및 교통란에는 도로공사, 도로용 교량은 물론 도
로도장도 모두 포함된다. 이곳에서 도로공사란 항은 도
로의 신설뿐이 아니라 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도로의 수
리 유지공사도 포함되며 교량에도 일반적인 목교, 콘크
리드뿐 아니라 고가도로 육교, 임제교차로 등의 신설과
교량의 재해복구공사 보수, 유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등도 모두 포함시킨다. 다만, 철도용 교량(철강교 등)은
철도제도란에 포함시킨다.
- (3) 기계설치란 공종은 이번 동태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항목
이다. 이곳에 해당되는 공사내용은 독립된 각종 제조기
계의 설치공사가 주대상이 된다. “예”로 식조기의 설
치, 방지기의 설치, 야에스크림가공기계설치 등 이미 제조
된 기계의 설치작업을 말한다. 다만, 본 조사의 국공
종과 중복되는 발전, 변전 시설등은 해당항목에 별도

분류하고 항만, 운항등의 건설업종 부분적으로 기계설치
가 있을 경우는 별첨 공종분류에 별도로 기기부류에 속하
는 것 외에는 해당 주된 공사에 포함시키며 승강기 설
치, 병진방 설치, 수진장차공사, 냉동, 냉장, 세정
장치, 온도조절장치등 공사는 별첨되는 공종분류해설을
참고하여 기타 건설공사에 포함시킨다.

(4) 기타 토목공사에는 조사표상에 나타난 토목공사 공종명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공사를 포함시킨다. “예”로 준설,
색도, 턴削减 운하공사 등이다.

마) 기타 건설공사

건설공사 중 건축 토목공사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전문직별
공사로서 벽돌, 부록, 미장, 토공공사, 목공공사, 철
강공사 등의 개인기능에 따른 임의공사와 천기, 천진,
전화, 상수도 시설(배관) 공사등의 일정한 관계부처의 면
허를 소지한 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는 공사가 있다.

건설공사에 주된 공사로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사용하기 위
해 부분적인 혹은 대부분적인 전문직별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될 경우는 주된 공사 수주액에 모두 포함시키고 대상 사업자중 전문직별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주받아 시행될 경우만 이곳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전기공사 같은 것은 독립된 공사 발주가 자주 있는 공종이므로 조사표 작성시 예외해서 구분 기입하여 주기 바란다.

iii) 발주차별

발주차별은 공공기관 민간 외국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기타로 구분된다.

(a) 중앙정부는 중앙 각 부처뿐 아니라 각 원; 청, 대법원, 검찰청등이 포함되며 중앙 각 부처의 지방주재기관도 포함된다.

(b)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와 구·시·군, 그리고 교육위원회, 각 시군 교육청등이

포함된다.

(여) 국영기업체는 기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기의 운영은 정부의 지시·감독에 의하는 사업체로서 이들의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기업체를 말하며 전매·철도·체신관계 발주 공사와 ○○시주 국토건설국 등은 이곳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 도로공사, 주택공사, 한국전력, 준설공사, 포항종합제철, 석탄공사, 국정교과서(주) 등

(여) 기타.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즉 학교, 주리조합,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농협 등.

(2) 민간

민간 발주공사는 제조업체, 비 제조업체, 개인으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따라서 조사원은 발주자 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응답자와 충분한 톤으로 발주자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판단한 후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a) 제조업체 :

음식료품공업, 섬유류공업, 화학섬유류공업, 철강공업

기계류공업 빗 기타 제조업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① 음식료품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31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업체는 담배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시킨다.

따라서 식료품 제조업체는 물론 음식품제조업체도 이
란에 해당된다.

② 섬유류공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32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업체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섬유제조업체는 물론

의복제조업체(신체제조업체)와 가죽, 가죽대용품 빗

털가죽제품 제조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③ 화학 석유공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35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물론 석유정제

업체, 서류 및 석탄의 삽제품 제조업체와 고무제품

제조업체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도 모두 포함된다.

④ 철강공업

한국 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 37에 해당되는 제/차 금속제조업체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제/차 철강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제/차 비철금속제품 제조업체가 모두 이곳에 포함된다.

⑤ 기계류공업

한국 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 38에 해당되는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체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금속제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기계제조업체, 전기, 기계, 기구제조업체 및 수송장비 제조업체와 사전, 과학기구, 과학적 계측 및 조정용기계 기구제조업체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⑥ 기타 제조업체

이곳에서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체로,

예를 들면 제지업, 무제품 및 기구 제조업체와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업체 그리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유리등)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
된다.

(4) 비 제조업체

비 제조업체는 금융보험, 운송보관, 기타로 구분
조사한다.

(5) 개인

어떤 사업체명의가 아닌 개인 빌주·건설공사인 경우
이란에 해당된다.

(3) 외국기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관, 상사 또는 외국인부대
에서 빌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외국화폐로 계약되었을
시는 계약당사의 풍정환율에 의한 금액으로 기입한다.

4) 원 재료

가) 본 조사에서 유일하게 물량으로 파악하는 탓으로 건설공사
를 위한 주요 원재료의 물량·재고, 물량·수입·및 사용

량과 과부족보정량, 월말 재고량을 파악함으로서 주로 원

자재의 월별 수급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및 공사실적에

의한 원자료 사용자료등을 얻고자 한다.

+) 원자료의 소재지 여하에는 관계 없이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포함되며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다른
사업체에 준것도 도급업체의 소유원자료로 함께 파악해야
한다.

+) 이곳에서 조사하는 원자료는 세멘트, 목재, 합판, 철근,
유류등 5가지의 주요 원자료로 한정하였다. 세멘트와 철
근은 m^3 , 목재, 합판은 m^2 , 유류는 KE 등으로 단
위를 지정하였으나 대상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할 시는
조사원이 이 지정 단위로 환산 기입해야 한다.

라) 흔히 쓰이는 단위의 지정 단위 환산법은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text{ 세멘트 } 1포 = 40 \text{ kg} = 0.04 m^3$$

$$\textcircled{2} \text{ 철근 } = \text{거직에 관계 없이 } 4kg \text{ 으로 환산}$$

$$\textcircled{3} \text{ 목재}$$

$$1 \text{ 평} (\text{사이}) \doteq 0.06334 \text{ m}^3 = 1 \text{ 치} \times 1 \text{ 치} \times 12 \text{ 치}$$

$$1 \text{ m}^3 \doteq 300 \text{ 평} (\text{사이})$$

$$3 \text{ 평} 1 \text{坪} - 9 \text{ 평}$$

$$4 \text{ " } " = 12 \text{ 평}$$

$$5 \text{ " } " = 15 \text{ 평}$$

④ 합 부

가로(万)	세로(万)	두께(미리)	/ 폐당 m^3	좌기두께의 13/17 당 m^3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107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③ 유류

유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건설공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파악하고 그의 유류는 기준으로 구분 조사한다.

유류의 사용 단위는 KL로 조사하나 사업체에서는 드럼, 개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위 환산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text{ 드럼} = 200 \text{ L} = 0.2 \text{ KL}$$

$$1 \text{ 개론} = 3.8 \text{ L}$$

마) 전월말 재고량

건설공사를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중 기록(사용)하고 전월말 현재 남은 량이다.

바) 금월중 수입량;

공사시공을 위하여 금월중에 구입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수입된 원재료를 말한다. 관급과 사급등 발주자의 지급이 건설자가 직접 구입했건 가리지 않는다.

구입인 경우는 원재료 구입계약 및 대금 차불이 원료되어

도 현률을 인수하는 절차(현률인수증을 받은 경우 등)가
완료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한다.

사) 금월중 사용량

건설공사를 위하여 당월에 투입된 량이다. 사용을 위해
보관창고에서 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품사현장에 적치해
두고 이를 되었다면 이는 사용량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아) 부부족 보정량 :

제해, 도난, 재지관등 시공을 위한 사용이외의 사유로
원재료가 결손되었거나 구입이외의 사유로 증가되었을 때,
그 증감량을 「+」 「-」 부호표시를 하여 기입한다.

자) 금월말 재고량 :

월말현재 그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량이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도출된다.

$$\text{금월말 재고량} = \text{전월말 재고량} + \text{월중 구입량} - \text{월중 사용량} \pm \text{부부족 보정량}$$

5) 종업원수 및 급여액

그 사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및 이들에 대한 급

여액이며 해외용사를 위하여 국내총업원이 파견되었을 때도
이들에 대한 것은 종업원수 및 급여액에서도 제외시킨다.

가) 종업원수

종업원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
에서 일을 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체의 업무에 종
사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동
경영자와 주주는 제외한다.

나) 피고용자수

(1)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간에 의하여 임금, 봉
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봉고 그 사업체
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하는 것으로
서 노무자를 제외한 피고용자를 배울발 현재로 기입하
되 장기결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
한다.

(2) 도급공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
급업체의 종업원은 도급공사업체의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3) 기술자

건설공사의 설계 및 그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종 건설관제 법령에 의한 면허소지자 및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이공계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예: 건축, 토목, 전기 및 전자기술자)

※ 기술자종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자만이 생산종업원에 해당되며 회사 내부에서 전문직, 서기관직업부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사무 및 기록 종업원에 포함시킨다.

[주] (ii) 건설법 제17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술자 심사위원회의 임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④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로 토목, 건

즉, 기계로 기술등급을 갑류, 을류,

병류로 구분한다.

(ii) 동법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

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의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공

사의 현장에 그 업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iii) 동법 제23조(건설기능공의 인정) 건설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속련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건설)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적, 전문

적, 서기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사환, 주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포함

한다.

(주)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록 종업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자는 그 근무시간수에 의하여 정한다.

(매) 기능공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등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통칭, 속련공을 말하며, 월중 연 인원수를 기입한다.

이곳에서는 속련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반속련공 및 전습공도 포함시킨다.

(바) 노무자 :

건설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육체적인 단순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각종 공사를 위하여 대상 사업체에서 투입한 월 연인원수를 기입한다.

4) 급여액

i) 급여란 험은 조사월에 피고용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외에 현물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퇴직금·상기결은자에 대한 제급여액 및 복리후
생비의 성격을 지닌 제비용(예)·위생·보건·위안·
수양·치료비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

(2) 조사월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월에 지
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대로 조사월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3) 급여액은 세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
전의 금액 즉,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을 기입하여 따
라서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즉
국세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 부담액도 급여액에 가산한다.

b) 임금·자불액

기능공 및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현금, 현물)을 말하며 계
산기준은 급여액과 같다.

2) 월등직업일수

대상 사업체에서 건설공사를 위하여 기능공 또는 노무자를 동원한 일수를 기입한다. 따라서 그 회사의 건설공사 일수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 없으나 순수한 기계 작업 일 경우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유의하여야 한다.

3) 월등공사계약 베역 ;

사업체에서 조사 당월에 발주받은 공사중 /천만원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종류(건축, 토목, 기타),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금액 등의 'ベ역'을 기입한다.
이란은 대체로 공사의 공종분류 및 발주자별 구분에서
착오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 시에게 충분히
이해 시켜 응답회피를 미연에 방지도록 해야 한다.

2. 해양경비용선은 차침서 배용대로 기입하고
3. 수주 및 교용, 급여, 증감내역란에는 전월과 비교해서 20% 내외로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3. 차타, 창고사행권에는 가결산에 의한 경우 그 배용등 기록 참 고가 레반트 사항을 기입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한다

1) 조사기준일(년·월·분), 사업체번호 등의 기입 누락여부

2) 항목별 합계의 합리성여부

3) 원재료의 함수관계 일치여부

$$\text{전월재고량} + \text{월중수입량} - \text{월중사용량} \pm \text{과부족보정량} = \text{월}$$

말재고량

4) 원재료의 단위가 “미터법”에 따라 지정단위로 환산되었나 여부

5) 고용급여의 합리성 여부

6) 계약변경내용란의 기입 타당성 여부

7) 전월과 차이가 심할때 증감사유 기재 여부

8) 기타 기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

나. 제출

-36-

- 1) 매월 15일 까지는 조사표를 회수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 2) 지도원은 접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월 러 두 기〉

이 산업분류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1990. 3. 13 개정판) 중 「대분류 5. 건설업」을 전재(轉載) 한 것이다
 (분류표)

대분류 5 : 건설업

중 분류	소 분류	세 분류
51. 종합건설업 (綜合建設業)	511. 건축 건설업 512. 토목 건설업	5110. 건축 건설업 5120. 토목 건설업
52. 전문직별공사업 (專門職別工事業)	521. 벽돌공 및 미장 (美匠) 공사업 522. 목공공사업 523. 철강공사업 524. 석축(石築) 타일, 기와 타일, 기와 공사업 525. 도장(塗裝) 공사업 526. 전기, 통신공사업	5210. 벽돌공 및 미장 공사업 5220. 목공공사업 5230. 철강공사업 5240. 석축, 타일, 기와 공사업 5250. 도장공사업 5260. 전기, 통신공사업

종 분류	소 분류	세 분류
	527. 배관(配管) 공 사업 529. 기타의 전문직	5290 배관 공사업 5290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대분류 5. 건설업

계약 및 수수로 아래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종합사업과 전문적인
직별 공사를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미기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체 단위도 포함되며 시공자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이
를 가리지 않는다. 건설기술용역업무는 제외된다.

중분류 51. 종합건설업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종합한 건설업을 말한다.

511 건축건설업

5110 건축건설업

계약 또는 수수로 아래서 주택, 「아파트」, 공업, 상업 및
공공건물과 같은 건물의 건설(신축, 증축, 변형, 개축 포함)
및 해체업을 말한다. 자기소유 건물의 유지, 보수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주택, 「아파트」, 농가, 공공건물, 상가 「아파트」, 발전
소, 특수공장, 병원, 학교, 강당, 체육관, 기념관등의 건설
업, 건축물 파괴업 및 수선업

5.12. 토목 건설업

5.12. 토목 건설업

철도, 「린밸」, 지하철, 환주로, 고속도로(파이프 라인) 가설,
경기장, 항만, 항만구조물(부두, 안벽, 물양장, 방파제등) 준설
공사등과 같은 토목공사(개축, 변형, 신축, 파괴)에 주로
종사하는 토목 건설업을 말한다.

- 임체교차로, 보도, 교량, 철도, 「린밸」, 지하철도, 고가교,
「모노레일」, 고속도로, 도로포장, 비행장, 공원, 경기장,
상하수도, 배수시설, 하천공사, 제방공사, 관개공사, 수영장,
토지개간, 유전 및 영전공사, 부두, 물양장, 방파제, 매립,
항구 및 수로해저전선, 해저 「린밸」 「독크」 축조, 「령」,
「케이블」과 준설등의 공사업

증분류 5.2.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은 건설계획공사 목록등의 일부분만을 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구성하는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
한다.

전문직별 공사업자는 종합건설도급업체로부터 제도급 맡아 공사하지

나 소유자로부터 직접 도급에 의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21 벽돌공 및 미장공사업

5.210 벽돌공 및 미장 공사업

「부록크」, 벽돌쌓기 및 미장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벽돌공사업, 미장공사업

5.22 목공 공사업

5.220 목공 공사업

형틀조립 및 제작, 목조건물조립등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목공 공사업

5.23 철강 공사업

5.230 철강 공사업

철골가공 및 조립, 철근가공 및 조립, 철판가공 및 조립, 「갓수」 공사, 비상계단 공사, 험식공사등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철골가공 및 조립, 철근가공 및 조립, 철판가공 및 조

Tip, 「샷수」공사, 「샷터」공사, 비상계단공사, 주강공사등
의 공사업

524. 석축(石築), 「타일」, 기와공사업

5240. 석축, 「타일」 기와공사업

석축 및 석적, 「타일」, 기와 및 「스레이트」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석축, 석적, 「타일」, 기와, 「스레이트」등의 공사업

525. 도장(塗裝)공사업

5250. 도장 공사업

「페인트」 및 「시멘트」 뿐어붙이기(崁付)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페인팅」공업, 「시멘트」뿐어 붙이기 공사업, 단청공
사업

526. 전기, 통신 공사업

5260. 전기, 통신 공사업

외선 및 내선, 전화도선, 신호장치등의 공사에 주로 종사하
는 업체를 말한다.

○ 송배전선선로, 전기설비, 전기배선, 「네온」장치, 전화선로
유선우선, 전화기계 설치, 전신기계 설치, 신호장치, 화재
정보기 설치등의 공사업

527. 배관 공사업

5270 배관 공사업

위생난방, 보이라 설치, 육설, 열전연공사 등에 주로 종사하
는 업체를 말한다.

○ 위생난방, 보이라설치, 육설, 열전연, 온습도장치, 건조장치,
급배수장치, 세동장치등의 공사업

528.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5280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내장, 도배, 유리, 방수, 온돌, 정원, 「콘크리트」, 잠수 및
기타 전문직 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실내장식, 도배, 유리, 온돌, 방수 「콘크리트」, 목재건구,
마루, 창호, 잠수등의 공사업, 조원업

〈일 러 두 기〉

① 공종분류는 건설업 동태조사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 분류5 건설업」의 산업 세분류를 각 건설 시공품의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종 분 류	세 분 류
51. 종합건설업	5110. 건축 건설업 5120. 토목 건설업
52. 전문직별공사업	5210 벽돌공 및 미장(美匠) 공사업 5220 목공 공사업 5230 철강 공사업 5240 석죽(石築), 「타일」, 기와 공사업 5250 도장(塗裝) 공사업 5260 전기 통신공사업 5270 배관 공사업 5290 기타의 전문직 공사업

② 「5/20토목건설업」중의 부대 건축공사(附帶建築工事)는 전부

「5/10 건축건설업」에 분류한다.

③ 건축들의 분류단위는 동(棟)이며 하나의 동이 2종이상의 용

도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저평(建坪)을

점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거주용(居住用)

으로 점용(占用)되어 있는 건평이 현건평(延建坪)의 20%

이상일 때에는 거주산업 병용건물에 분류하고 20% 미만일

때에는 타(他)에 분류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용도가 변하

는 건축들은 조사기준 시점에서의 용도에 의하여 분류한다.

④ 별도 설명이 없는한 기존시설의 해체(解體), 제각(拆除), 이설

(移設), 유지보수(維持補修) 또는 재해복구(災害復舊) 공사는

해당 시설의 공사에 분류한다.

산업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10 건축건설업	511001	주택	<p>거주 전용 건축물과 전적으로 거주에 사용되는 건축 및 산업 용과 거주용이 결합된 건축물로 서 거주에 사용되는 부분의 건 평이 연면적(延建坪)의 20%</p> <p>이상인 경우의 건축물공사,</p> <p>o. 주택, 기숙사, 학숙소등과 이를 의 부속 건축물 및 상점, 사 무소, 은행, 다방, 회사, 이발소, 미용院, 병원, 영화관등의 건축 물로서 거주에 사용되는 부분 의 건평이 연면적의 20%</p> <p>상을 차지하면 여기에 분류 한다.</p>

산 세 분 류	품 종 분 류 번호	공 종 명 (工種名)	비 고
	511002	사무실, 정 포, 숙박시설, 오락장	<p>「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 「8,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 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 며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 동산업 및 음역업」과 「9, 사 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u>중분류 T91, 공공행정 및 국 방」용 건물과 중분류 「93, 사회서비스업」 중의 소분류 <u>「931, 교육서비스용」 건물과 중분류 「96, 국제 및 외국기관」 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 한다.</u></u></p> <p>○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용 사무소, 정포, 적업장,</p>

산업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p>창고, 차고등의 건축물 및 「금 속업」, 「보험업」, 「부동산업」, 「용역업」, 「기계장비임대업」, 「의생서어비스업」, 「조사 및 과학연구기관」, 「사회복지기구」, 「기업전문 및 노동단체」, 「오락 문화서어비스업」, 「개인 및 가 계서비스업」 등 사무소, 작업장, 차고등의 건축물을 </p>
511003	공장, 공업 용창고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2. 광업 및 제식업」, 「3. 제조업」, 「5. 건설업」에 사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 「광업」, 「제식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무소, 공장, 작업</p>

간 업 세 분류	공 종 분류번호	공 종 명 (工 種 名)	비 고
			<p>장, 창고, 차고등의 건축물.</p> <p>* 「서어비스업」에 속하는 수 리 재생업용 건축물은 511002 에 분류한다.</p>
	511004	광공서, 학교, 병원용건축물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과 소분류 「931. 교육서비스업」 과 중분류 「96. 국제 및 외국 기관」에 사용되는 건출률 o.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경찰, 주한외 국공관과 국, 공사립의 각종교학 기관의 교실, 사무소, 창고, 작업 장, 차고등의 건축물.</p>
	511005	기 타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4. 전기, 가스, 수도사업」과</p>

잔업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5120 토목건설업	512001	치산치수 (治山治水) 공사	<p>「7. 운수보관 및 통신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세분류 T1.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어업 및 기타 카테고리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 물.</p> <p>○ 「전기업」, 「가스업」, 「수도 사업」, 「운수업」, 「보관업」,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등 사무소, 작업장, 창고, 차고, 양축사 등의 건축물,</p> <p>하천공사(河川工事), 사방(砂防) 공사, 치산(治山) 공 사, 해안제방, 해안침식 대책(海岸 堤防, 海岸侵蝕对策) 공사.</p> <p>예 : 하천의 개수공사, 하천의</p>

산 업 세 부 휴	공 종 분류번호	공 종 명 (工種名)	비 고
			유지공사, 하천의 재해복구공사, 수문(水門) 설치
			공사, 가계장치, 관계공사
			기타의 하천공사, 사방조림(防防造林) 공사, 사례
			방지공사, 부대사방 시설
			공사, 사방시설의 재해복구공사, 차산공사, 차산시설의 재해복구공사, 부대차산 시설공사, 해안제방
			공사, 해안침식 대책공사, 고조(高潮) 대책공사, 진파(津波) 대책공사, 해안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의 해안제방, 해안침식

산업 세분류	공종 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p>대책공사</p> <p>※ 하천의 준설(浚渫) 공사</p> <p>는 5/20/11에, 하천의 유지공사 중의 「댐」공 사는 5/20/09에 운하 봉사는 5/20/11에 봉 류하고 부대건축공사는 5/10/05에 봉류한다.</p> <p>5/20/02 농림수산시설 공사 (農林水 產施設工事) 농지, 농도, 초지, 농업시설공사 (農地, 農道, 草地, 農業施設工事); 개간, 간척공사 (窪墾, 干拓工事); 임도 (林道) 공사, 어항, 어초, 양 식시설공사 (漁港, 漁礁, 養殖施設 工事), 예 : 관개배수 (灌溉排水) 공사,</p>

산업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p>객토(客土) 공사, 기타</p> <p>토지개량공사, 농도공사,</p> <p>농지보존공사, 농지농업의 개해복구공사, 펌프, 수문 설치공사, 기타의 기계장 치 관개공사, 개간용농도 (農道) 공사, 개간용배수 (排水) 시설공사, 개간용 수원(水源) 시설공사, 방 재(防災) 시설공사, 기타 의 개간공사, 제방공사, 간선수로(幹線水路) 공사, 펌프, 수문설치공사, 기타 기계장치 관개공사, 배부 개담(內部開濱) 공사, 재</p>

산업 분류	공종 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해복구공사, 임도(林道)
			공사, 어항수축공사, 상옥 (上屋), 급유시설(給油施 設) 공사, 양식장 설치공 사, 기타 어항 시설공사.
			* 어항구역내의 해안제방공 사는 512001에, 수원 (水原) 시설 공사중의 「땀」공사는 512009 에, 부대건축공사는 511005 에 분류한다. 개간용 농도가 영구적인 도로일 때에는 512003에 분 류 한다.
512003	도로(道路)		예: 토사도(土砂道) 공사, 쇠

산업부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토교량	석도(碎石道) 공사,
		공사(도로)	액청(瀝青) 「마카담」 도공사,
		포장(포함)	「아스팔트 콩크리트」 도공사, 「Sheet 아스팔트」 도공사.
			「아스팔트」 유제포장도 공사, 「시 멘트 콩크리트」 도공사, 과(塊) 포장도 공사, 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도로의 수리·유기공사, 도로 용교량, 도로의 포장공사.
			예: 목교(木橋) 공사, 콩크리 트교공사, 석교(石橋) 공사
			고가도로(高架道路) 공사
			육교(陸橋) 공사, 업체 교차로(立体交叉路) 공사
			교량의 재해복구공사, 교

산업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p>항의 보수유지공사, 부 대시설공사, 도로용철강 교공사.</p> <p>예 : 수역시설(水域施設) 공사, 외각시설(外殼施設) 공사, 급유시설(給油施設) 공사, 항항교통시설(跨港交通施 設) 공사, 항해보조시설공 사, 하역시설공사, 여객시 설공사, 보관시설공사, 항만후생시설공사,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 항만 시설공사, 활주로(滑走 路) 공사, 관제시설(管制 施設) 공사, 조명시설공사,</p>
	512004	항만·공항 (港灣·空港) 시설공사	

신 세 분 류	공 종 부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급유시설 (給油施設) 공 사, 격납고 (格納庫) 시설공사, 시설의 재 해복구공사, 시설의 유지, 개수공사, 기 타 항항시설공사.
			예 : 항만구역내의 해안보 조공사는 5/2001 예 준설공사 (浚渫工 事)는 5/2011 예, 임항교통시설 중의

사업 부류	공종 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철도시설공사는 5/2005에, 부대전
			축공사는 5/1005 에 분류한다.
			철주로의 도장공사는 5/2003에, 통신시설
			공사는 전문직별공사 에, 공항빌딩 등과 같은 건축공사는 5/1005에 분류 한다.

산업 분류	공종 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512 005	철도·궤도 (鐵道·軌道) 시설공사	<p>예 : 노선시설 (路線施設) 공사, 정거장시설공사, 방재시설 (防災施設) 공사, 전기시설공사, (발전송전시설 제외), 신호 (信號) 보안 (保安) 시설공사, 정비시설공사,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록 철도, 철도시설공사, 철도용 철강 교공사,</p> <p>* 철도용 「린밸」 공사는 512011에, 통신시설공사는 전문직별 공사에, 역사 (駁舍), 정비공장 등의 건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512 006	상하수도시설 공사	예 : 수원 (水源) 시설공사, 흙수 (取水) 시설공사, 토수 (導水)

선 분류 업 체	공 종 분류번호	공 종 명 (工種名)	내 용
			시설공사, 정수 (淨水) 시설공사, 배수 (排水) 시설공사, 배수 (排水)
			시설공사,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
			* 수원시설공사 중의 「법」 공사는 5/2009에, 부대건축 공사는 5/1005에 분류한다.
			예 : 도수 (導水) 시설공사, 배수 (排水) 시설공사, 양수 (揚水)
			시설공사, 측수 (側清) 시설공사, 오물처리 (汚物處理) 시설공사, 투 개 (覆蓋) 공사, 기타 하수도 시 설공사.
			* 부대건축 공사는 5/1005 에 분류한다.

신고일 세종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고
	512007	발전·송전· 변전·배전· (發電·送電· 變電·配電) 시설 공사	<p>예 : 수력발전시설공사, 화 력발전시설공사, 원자력발전시설공 사, 송전시설공사, 변전시설공사, 배전시설공사.</p> <p>* 수력발전시설공사중의 [법] 공사는 512009에 송전 소·변전소·배전소 등의 건 축공사는 511005에 분류한다.</p>
	512008	토지조성(土地造成) 공원 운동 경기장 시설 공사	<p>예 : 매립(埋立)공사, 정 지(整地)공사, 법면보호(法面保 護)공사, 배수시설(排水施設)공 사, 금수시설(給水施設)공사, 기 부 토지조성공사, 공원시설공사, 운동경기장시설공사.</p> <p>* 항만공사, 간척공사에</p>

산업류 세분류	품종번호	품종명 (工種名)	내용
			<p>속하는 매립(埋立). 풍사는 여기에서 제외한다.</p> <p>공원, 운동경기장, 시민체육관, 경마장,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등에 부속되는 건축물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학교와 주택에 부속된 운동장과 유원지도 제외한다.</p>
512009	婊 공사		<p>예: 가체결(假繩切) 풍사, 가배수로(假排水路) 풍사, 풍사용 도로풍사, 기초콘크리트(基礎混凝土) 풍자. Grouting 풍사, 「婊」축 조풍사, 여수로(餘水路) 풍사, 방수로(防水路) 풍사, 기계설치풍사, 기타 「婊」, 시설풍사</p>

산업 세분류	공종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10	기계설치공사	<p>예: 직조기·방직기의 설치공사, 아이스크림가공기계 의 설치공사, 에스카레이터 설치 공사, 기중기 설치공사 등</p>
	512011	기クト목공사	<p>예: 「현별」공사, 해저 「현별」공사, 기중기(起重機) 설치공사, 「에스카레이터」설치공 사, 운하공사, 준설공사, 색도설 치공사 등</p>
52	전문직별공사		<p>※ 위에서 분류되지 않 은 토목공사는 여기에 분류한다. 전문직별공사는 같은 틴에 모두 포함시키지만 참고로 다음과 같은 공종분류를 예 기한다.</p>

상호	품종 분류번호	품종명 (工程名)	내용	설명
5210	521001	벽돌·부록 미장·토공사	예: 벽돌쌓기공사, 미장공 사, 토공(土工) 공사 등	
5220	522001	목공공사		
5230	523001	철강공사	예: 철골(鐵骨) 공사, 철 근(鐵筋) 공사, 관금(鍛金) 공 사, 금속제 샷수공사, 비상계단공 사, 주창공사, 기타 철강공사	
5240	524001	석축, 티일, 기와공사	예: 석축(石築) 공사, 「티일」공사, 「기와」공사, 「스 레이트」공사	
5250	525001	도장(塗裝) 공사	예: 도장공사, 시멘트쁨어 붙이기(吹付) 공사, 단청공사	
5260	526001	전기·통신 공사	예: 송배전선선로(送配電 線路) 공사, 전기설비공사, 전기배 선(配線) 공사, 「네온」공사, 전	

산 세 분 류	제 품 분 류 번호	종 종 명 (工 種 名)	비 고
			<p>화선로공사, 통선토목공사, 유선무선 전화기계설비 설치공사, 전신기계 설 치공사, 신호장치공사, 화재경보기설치 공사, 기타 전기설비, 통신, 신호장치 공사</p>
5270	527001	배관공사	<p>냉난방 (冷暖房) 시설공사, 온 도조절장치공사, 건조 (乾燥) 장치공사, 쟁동, 쟁창 및 제빙장치공사, 급배수 (給排水) 설비공사, 소화 (消火) 설비 공사, 위생설비공사, 기타 배관공사</p>
5290	529001	기타 전문 적 공사업	<p>총동 설치공사, 열절연 (熱絕緣) 공사, 승강기 (乘降機) 설치공사, 수진 (收 署) 장치공사, 내장 (內裝) 공사, 도배 공사, 유리공사, 온돌 (溫窟) 공사, 잠 수 (潛水) 공사, 조원공사, 지붕공사,</p>

선 업 체류류	통 속 분류번호	공 속 명 (工 種 名)	비 고
			<p>비계 (樺階) 공사, 장호공사, 측로 풍사, 「콘크리트」 공사, 특수 「콘 크리트」 공사, 「레미콘」 공사, 방수 (防水) 공사, 기타 전문직공사</p>

1976년 전설업동태조사

조사표 기입 요령서

1 9 7 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1
3. 조사범위 및 대상	1
4. 조사단위	2
5. 조사사항 (항목)	3
6. 조사방법	3
II. 조사항목의 해설 및 기입요령	4
1. 일반적인 유의사항	4
2. 항목별 해설 및 기입요령	5
부록 I. 산업분류 (건설업)	21
부록 II. 공종분류 해설	33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건설업 부문의 발주자 및 공종별 수주액(계약액), 주요원재료 및 고용상황등의 건설활동을 월별로 파악하여 경기선행 지표를 작성하는등 건설업과 관련된 제반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이 조사의 기준일은 매월 말일이며 기준기간은 해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한다.

3. 조사범위 및 대상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분류 5. 건설업」이며 조사대상사업체는 건설부장관면허업체중 조사 목적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 건설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건설업의 정의

- (1) 계약 및 수수로 아래 또는 자기계정(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미기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체 단위도 포함되며 사공자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건설공사라 함은

- (가)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하는 공작물 및 이들의 부대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해체, 세거 및 이설(移設) 공사
- (나) 토지, 항로(航路), 유로(流路) 등의 개량 혹은 조성공사.
- (다) 전기공사, 팬공사(管工事) 등의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혹은 이설공사등을 말한다.

(2) 건설업과 타산업간의 관계

- (가) 기획, 조사, 측량, 설계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8.404 (토목, 건축 및 기술서비스업)에 분류된다.
- (나) 토지, 견물등의 부동산임대업, 대지업, 중개업, 관리업 등은 「소분류 831. 부동산업」에 분류된다.

4.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건설업 사업체로 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사업체와 함은 비교적 영구적인 사무소(본점, 지점, 개인기업주의 자택등)를 가지고 그곳에서 건설활동을 위하여 입찰, 기획, 감독 및 도금계약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은 건설업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그 현장을 관할하는 사업체에 포함한다.

5. 조사사항(항목)

본 조사는 지정된 건설업체의 월중제약액(발주자 및 공종별)과 원재료, 종업원수 및 급여액 등을 조사하고 1천 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역을 조사한다.

6. 조사방법

타계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식조사방법을 병행한다.

II. 조사항목 해설 및 기입요령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사표 각 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 및 항목별 기입요령을 숙지한 후 조사 기입해야 한다.

1.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는 조사완료후 분류, 심사, 집계 등 여러 작업에 계속 사용되며 영구보존되므로 다음 사항에 각별 유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칸에 끝도록 깨끗이 작성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2.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며 특히 4와 6, 0과 6, 3과 5, 7과 9등을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다. 각 수량, 금액에 단위 미만은 4자5입 하여야 한다.

라. 오기 사항을 정정코자 할 때에는 잘못된 곳에 두줄로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옮은 것을 기입하여 적색 또는 주색잉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2. 항목별 해설 및 기입요령

가. 사업체 번호

사업체 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 한다.

나. 계약액

계약액 (수주액) 이란 조사기준기간에 신설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주(施主)와 직접계약한 총도급액을 말한다.

(1) 본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 계약액을
발주자 및 공종별로 구분 기아하며 발주자는 공공기관, 민간,
국내 외국 기관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기입하고 공종은
건축, 토목, 전문직별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사별로 해당되는
공종란에 기입 한다.

(공종분류는 별첨하는 부록Ⅱ. 「공종분류 해설」을 참조
할것)

(2) 조사기준 기간은 최종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응찰중에 있거나 시공자측에서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거나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공사의 일부를
착공하였더라도 계약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월에 낙찰되었다 해도 계약을 익월에 체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전월에 낙찰되고 해
당월에 계약한 것은 해당된다.

(3) 계약변경

공사계약은 시공중에도 설계변경, 공기연장, 원재료비의 등기 또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의등의 원인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같이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가) 계약액의 증가 또는 추가계약시

별개 공사의 계약액과 같이 발주자 및 공종별 해당란에 증가 또는 추가계약액을 기입하고 청요란에 ① 계약변경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시 : 1월 중에 정부발주의 공무·문교용 건축공사액으로 1억원이 이미 계약되어 조사표에 작성 보고된 후 3월에 설계변경으로 3천만원이 증가되었을 때 그 증가금액 3천만원을 3월조사표 계약액란에 해당 부분인 1. 건축공사, 04. 공무·문교용 탄을 따라 I 공공기관의 ① 정부란에 기재하고 청요란에는 "1-04-I-① 계약변경으로 1월분 계약액 1억원에서 3천만원 증가(추가계약)"라고 기입한다.

(나) 계약액의 감소 또는 해약시

건설공사가 계약되어 시공중 계약변경으로 계약액이 감소되었거나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란에는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청요란에 변경된 내용만을 기입한다.

이때에도 반드시 몇월분 계약액과 발주자 및 공종명의 변경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공종명(工種名)은 계약단위로 하여 각 공사건별로 조사표상에 분류된 공종에 따라 사업체의 공사계약액을 분류한다.

(부록Ⅱ 「공종분류해설」을 참조하여 공종분류에 각별히 주의, 잘못이 없도록 하며 특히 전문직별공사에 유의 할것)

(1) 건축

건축공사는 공종에 따라 주거용, 상업 및 서비스업용, 광공업 및 건설업용, 공무문교용, 공익사업용 및 기타 등 5개 공종으로 구분한다.

(2) 토목

(가) 치산 치수등 11개공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사표 작성시 공사명에 구애되지 말고 공사 성질에 따라 별첨하는 「공종분류해설」을 충분히 참고하여 해당란에 구분 기입한다.

(나) 도로 및 교량란에는 도로공사, 도로용 교량은 물론 도로포장도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서 도로공사라 함은 도로의 신설뿐만 아니라 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도로의 수리

유지 공사 등도 포함되며 교량에도 일반적인 목교, 콘크리트뿐 아니라 고가도로, 육교, 임체교차로 등의 신설화 교량의 재해복구공사, 보수유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등도 모두 포함시킨다. 다만, 철도용 교량(철강교 등) 공사는 철도 궤도란에 포함시킨다.

(4) 기계 설치는 독립된 각종 제조기계의 설치 공사가 주대상이 된다. "예"로 제조기의 설치, 방직기의 설치, 아이스크림 가공기계 설치 등 이미 제조된 기계의 설치작업을 말한다. 다만, 본 조사의 타공종과 중복되는 발전, 변전 시설등은 해당 항목에 별도 분류하고 항만, 공항등의 건설업 중 부분적으로 기계 설치가 있을 경우는 별첨 공종분류를 참조하여 분류하고 그외에는 해당 주된 공사에 포함시키며 승강기 설치, 냉난방 설치, 수진장치공사, 냉동, 냉장 제빙장치, 온도조절장치 등 공사도 별첨 된 공종분류해설을 참고하여 전문직별공사에 포함시킨다.

(5) 기타 토목공사에는 조사표상에 나타난 토목공사 공종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공사를 포함시킨다. "예"로 준설, 색도, 텐넬, 지하도, 운하공사 등이다.

(3) 전문직별공사

건설공사중 건축 토목공사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건설공사로서 벽돌, 브록, 미장, 토풍, 목공, 철강공사 등의

개인 기능에 따른 임의공사와 전기, 전선, 전화, 상수도 시설 (배관) 공사등의 일정한 관계부처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만 시공이 허용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공사에 주된 공사로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부분적인 혹은 내부적인 전문직별 공사를 부수적으로 시행할 경우는 주된 공사 수주액에 모두 포함시키고 대상 사업체중 전문직별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주받아 시행할 경우만 이곳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공사 같은 것은 독립된 공사 발주가 자주 있는 공종이므로 조사표 작성시 유의해서 구분 기입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별

발주자별은 공공기관, 민간, 국내 외국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을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기타로 구분한다.

(1) 정부 : 중앙 각 원, 부, 처, 청, 뿐만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포함되며 중앙 각 부처의 지방주재기관과 군부대 및 국립대학등도 포함된다.

(2)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

와 구·시·군, 그리고 교육위원회, 각 시군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등이 포함된다.

(다) 국영기업체 : 정부기관(부·청)에서 운영하는 체신, 철도, 전매 등을 제외하고 (이들은 정부기관에 포함사킬것) 기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이들의 운영, 임원의 임용등 주요사항을 정부의 지시 감독에 의하는 사업체로서 이들 대부분은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출자에 의존하고 있다.

예 : 각종 공사(公社), 한국전력, 포항종합제철, 한국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특수은행

(일반 시중은행은 민간부문의 금융보험업으로 분류 할것)

(라) 기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분류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 또는 필요에 따라 특별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 연구원(소) 또는 영조물법인 등을 말한다.

예 : 토지개량조합, 농협, 어협, 각종 공공연구소(원) 상공회 의소, 대한척식자사 등

(2) 민간

민간 발주공사는 제조업, 비제조업으로 구분하고 다

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따라서 발주자의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판단한 후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자가 제조업체일 경우, 발주자의 주된 제품명을 확인한 후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음식료품공업, 섬유류공업, 화학섬유류공업, 철강공업 기계류공업 및 기타 제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① 음식료품공업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 31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업체 중 담배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시킨다. 따라서 식료품 제조업체는 물론 음료품제조업체도 이 란에 해당된다.

② 섬유류공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32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업체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섬유제조업체는 물론 의복제조업체(신제조업체와)와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③ 화학 석유공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35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업체가 해당된다. 따라서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물론 석유정제업체, 석

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체, 고무제품제조업체, 기타 푸라스틱제품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④ 철강 공업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중분류 37에 해당되는 제1차 금속제조업체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제1차 철강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제1차 비철금속제품 제조업체가 포함된다.

⑤ 기계류공업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중분류 38에 해당되는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금속제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기계제조업체 전기, 기계기구제조업체 및 수송장비 제조업체와 사전, 과학기계기구, 과학적 계측 및 조정용기계 기구 제조업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⑥ 기타

이곳에서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체로, 예를 들면 제재업, 나무제품 및 가구 제조업체와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업체 그리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유리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 비 제조업

비 제조업체는 금융보험, 우수보관, 기타로 구분

조사한다.

(3) 국내 외국기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외국군대 및 외국상사등이 발주한 것으로 우리나라 영토내의 공사로 발주한 것을 말한다. 외국화폐로 계약되었을 시는 계약당사의 공정환율에 의한 금액으로 기입한다. (환산곤란시는 외국화폐로 기입)

마. 원재료

(1) 본 조사에서 유일하게 물량으로 파악하는 탓으로 건설공사를 위한 주요 원재료의 월초 재고, 월중 수입 및 사용량과 과부족보정량, 월말 재고량 등으로 구분 기입한다.

(2) 원재료의 소재지 여하에는 관계없이 건설업을 위하여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포함되며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다른 사업체에 준것도 도급업체의 소유 원재료로 함께 파악해야 한다.

(3) 건설업체가 타업종(제조업, 판매업등)을 겸영할 경우는 건설공사를 위한 수입, 사용, 재고량만을 조사 기입한다.

(4) 공사현장에서 보고지역 등으로 조사시기에 원재료파악이 불가능할 경우는 공사종류, 공기(工期), 공사진척율등을 감안, 잠정치를 제출 기일내에 보고한후 확정치가 파악 되는데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원재료는 시멘트, 목재, 합판, 철근, 유류등 5 가지의 주요 원재료만을 조사한다. 시멘트와 철근은 M/T , 목재, 합판은 m^3 , 유류는 $K\ell$ 로 단위가 지정되었으니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단위로 환산 기입해야 한다.

(6) 흔히 쓰이는 단위의 지정 단위 환산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멘트 1 포 = $40 K\ell = 0.04 M/T$, $1 M/T = 25$ 포

② 철 근 = 규격에 관계없이 M/T 으로 환산

③ 목 재

$$1 \text{ 才} (\text{사이}) \doteq 0.00334 m^3 = 1 \text{ 치} \times 1 \text{ 치} \times 12 \text{ 치}$$

$$1 m^3 \doteq 300 \text{ 才} (\text{사이})$$

$$3 \text{ 分板} 1 \text{ 坪} = 9 \text{ 才}$$

$$4 \text{ " } " = 12 \text{ 才}$$

$$5 \text{ " } " = 15 \text{ 才}$$

④ 합 판

규 격			1 애당 m^3	좌기 두께의 $1 S/F$ 당 m^3
가로 (F)	세로 (F)	두께 (mm)		
4	8	3.2	0.0095232 0.0053568	0.0002976
4	8	3.6	0.0107136 0.0060264	0.0003348
4	8	4	0.011904 0.006696	0.000372
4	8	6	0.017857 0.010044	0.000558
3	6			

(5) 유류

유류는 휘발유와 경유, 기타로 구분 조사한다.

유류의 사용 단위는 kl 로 조사하나 사업체에서는 드럼, 개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단위 환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1 \text{ 드럼} = 200\ell = 0.2 \text{ K}\ell$$

$$1 \text{ 개론} = 3.8 \ell$$

(7) 월초 재고량

건설공사를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중 기투입(사용)하고 전월말 현재 남은 량이다. 따라서 월초 재고량은 전월말 재고량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8) 월중 수입량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해당월중에 구입하였거나 수입된 원재료를 말한다. 환급과 자급동 발주자의 지급이전 시공자가 직접 구입했건 가리지 않는다.

구입인 경우는 원재료 구입계약 및 대금 지불이 완료되어도 현물을 인수하는 절차(현물인수증을 받은 경우등)가 완료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한다.

(9) 월중 사용량

건설공사를 위하여 당월에 투입된 량이다. 사용을 위해 보광창고에서 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적

치해 두고 이월되었다면 이는 사용량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10) 과부족보정량

재해, 도난, 재시판등 시공을 위한 사용이 외의 사유로 원재료가 결손되었거나 구입이 외의 사유로 증가되었을 때, 그 증감량을 「+」「-」 부호표시를 하여 기입한다.

(11) 월말 재고량

월말 현재 그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량이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도출된다.

$$\text{월말 재고량} = \text{월초재고량} (\text{전월말 재고량}) + \text{월중 구입량}$$

$$- \text{월중 사용량} + \text{과부족 보정량}$$

바. 종업원 수 및 급여액

그 사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 및 이들에 대한 급여액이다.

(1) 종업원수

종업원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동경영자와 주주는 제외한다.

(가) 피고용자수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간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하며, 기능과 노무자는 월중연인원수를 기술자, 기술공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은 매월 말 현재로 기입하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2) 도급공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업체의 종업원은 도급공사업체의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3) 기술자

건설공사의 설계 및 그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종 건설판계 법령에 의한 면허소지자 및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이공계 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예:건축, 토목, 전기 및 전자기술자)

(4) 기술공

전문적 기술자가 특히 지시한 기술을 책임있게 응용할 수 있으며 기술자의 지휘 또는 정립된 공학기술에 따라 필요로하는 기능공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초급대학(전문학교) 졸업자,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정부에서 공인하는 등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예:제도사, 토목공학기술공, 전기 및 전자 기술공등)

⑤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건설)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적, 전문적, 서기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승용차외의 운전사는 생산직에 포함) 등을 포함한다.

[주]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자는 그 근무시간수에 의하여 정한다.

⑥ 기능공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하며, 월 중 연 인원수를 기입한다.

여기에는 숙련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반숙련공 및 견습공도 포함시킨다.

⑦ 노무자

건설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육체적인 단순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각종 공사를 위하여 대상 사업체에서 투입한 월 연인원수를 기입한다.

(2) 급여액

(가) 급여라 함은 조사월에 피고용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 급여외에 현물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퇴직금 장기결근자에 대한 제급여액 및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지닌 제비용(예: 위생, 보건, 위안, 수양, 치료비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

(나) 조사월 이전의 급여로서 채불되었던 것을 조사월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대로 조사월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다) 급여액은 세금, 저축,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 즉,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을 기입하여 따라서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 부담액도 급여액에 가산한다.

(3) 임금지불액

지출자, 기술공동에게 지급되는 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현금, 현물)을 말하여 계산기준은 급여액과 같다.

(4) 월중작업일수

대상 사업체에서 건설공사를 위하여 기능공 또는

노무자를 동원한 일수를 기입한다. 따라서 그 회사의 전 설공사 일수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으나 순수한 기 계작업일 경우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유의하여야 한다.

사. 월중공사계약 내역 (조사표후면)

사업체에서 조사 당월에 발주받은 공사중 1천만원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종류(건축, 토목, 기타),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금액 등의 내역을 기입한다.

발주자가 제조업체일 경우는 주된 제품명을 참고란에 기입한다.

아. 적 요 란

(1) 계약변경내용란을 구체적으로 (몇월분, 공종명, 발주자) 기입한다.

(2) 수주액(계약액), 원재료, 종업원 및 급여액이 전월과 비교해서 2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라.

(3) 기타 참고사항란에는 가설 산에 의한 경우 그 내용등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기입한다.

부록 I. 산업분류 (건설업)

<일련 투기>

이 산업분류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5. 건설업」을 전체(転載)한 것이다.

〔분류표〕

대분류 5 : 건설업

총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51 종합건설업 (綜合建設業)	511 건물건설업	5111 주택건설업 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설업
	512 토목건설업	5121 도로건설업 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설업
52 전문직별 공사업 (專門職別工事業)	521 연관, 난방 및 관현공사업	5210 연관, 난방 및 관현공사업
	522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3 전기공사업	5230 전기공사업
	524 석공 및 미장공사업	5241 석공공사업 5242 미장공사업

총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525 목공공사업	5250 목공공사업
	526 지붕잇기 및 함 석공사업	526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527 구조강 전립업	5270 구조강 전립업
	528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5280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공사업	5291 유리공사업 5292 정자공사업 5293 굴정공사업 5294 해체공사업 5299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대 분류 5 건설업

Major Division 5. Construction

계약건설에 주로 종사하는 종합 및 전문직별 청부업체를 말한다. 모기업을 위한 건설품사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의 일부서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한다.

사전에 조립한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엘레베이터, 연판비품, 살수기, 중앙난방기, 환풍기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 건물조직과 모든 종류의 구조물의 필수품을 용지위에 조립하고 설치하는 활동은 건설활동으로 본다.

사전조립한 부품이나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의 일부서가 상기와 같은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그러한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가 가능하면 이 항목에 분류한다.

51 종합건설사업 (Construction-General Contractors)

건물의 건설, 개조, 수리 및 해체, 도로 및 교량, 육교, 차하, 수로, 하수도, 상수도, 가스 및 전기도관, 철도로반, 지하철, 항구 및 수로, 철탑, 공항, 땅, 관계수로, 배수로, 흥수조절 및 수력발전공사 및 수력발전소, 파이프라인,

우물, 경기장, 골프장, 수영장 및 테니스코트, 전기통신조직의 건설 및 보수와 준설 및 수중암거제거, 파일박기, 토지매수 및 개간 등과 같은 중건설공사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계약이나 수수료에 의거 광산용지의 정비 및 건설과 유전 및 천연가스정의 시추와 같은 광업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분류한다.

511 건물건설업 (Building Construction-General Contractors)
토목적인 건축공사를 포함해서 주거용건물, 사무실용건물, 병원, 호텔, 극장, 교회, 공장건물, 상업용건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11 주택건설업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51110 주택건설업

호텔, 기숙사 행형시설 및 군대막사와 같은 집단거주시설을 제외한 각종 주택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포함되는 주거용 건물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건물이 있으며 본질적인 재건축, 개축, 또는

개초는 포함하나 단순한 도장 등 보수는 제외한다.

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건설업

(Building Construction n.e.c)

511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사무실건물, 호텔, 학교, 병원, 극장, 상가, 음식점, 교회, 박물관, 도서관, 관공서건물, 상업용건물, 공장건물, 농장건물, 여객터미널건물, 창고, 차고, 주유소, 격납고, 방송국스튜디오, 식물원, 및 동물원 건물등의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2 토목건설업 (Heavy Construction-General Contractors)

건물을 제외한 철도, 도로, 항만, 교량, 터널, 뼈, 운하, 스타더움, 도시공공설비 및 기타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21 도로건설업

(Highway and Street Construction, Except Elevated Highways)

51210 도로건설업

고가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산업도로등의 자동차도로와 시가도로 및 도로와 연합된 구조

물을 건설, 개조 및 대량 보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은구, 차선분리대, 풍로표지, 도로가장자리, 방호난간 등과 도로조경공사 및 교통신구기 등이 도로건설과 결합되어 수행되면 여기에 포함한다.

교량 및 터널공사와 교통통제조직 및 조명시설공사는 제외한다.

도로의 전면 재포장과 재건설은 여기에 포함한다.

5129. 달라 분류되지 않은 토목건설업 (Heavy Construction n.e.c)

512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건설업

달라 분류되지 않은 토목건설업으로서 철로로선 및 선형구조물, 파악프라인, 항구 및 유사구조물, 운하, 교량 및 유사구조물, 터널, 뱀 및 유사 저수구조물, 수로 및 도관, 스타디움, 경기장 및 유사레크레이션 설비, 전력송전선, 통신선 및 구조물, 도시 공공이용조직 및 기타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화학공업용 장치를 현지에서 조립 및 건립하는 활동과 평산, 유전작업과 결합된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52 전문직별 건설업

(Construction-Special Trade Contractors)

종합건설계약자의 하청을 받거나 소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거 연관 난방 및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벽돌쌓기, 돌 및 타일부착, 대리석 및 석재가공, 목공, 마장이, 지붕잇기, 합석 및 전기공사, 우물공사, 구조강건립, 정치작업, 철거 및 해체공사, 건물의 수선 및 유지공사 등과 같은 건설계획의 단지 일부공사에만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사업체의 상용고용원인 정비직원이 사업체 구내에서 자체정비 또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면 제외한다.

521 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52100 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연관, 난방 및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말한다.
냉방공사, 환기공사 및 보일러 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도 포함한다.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배조 설치, 변소공사 등은 포함하나 하수관이나 하수처리플랜트의 설치는 제외한다.

건설활동과 연합해서 수행되는 환금공사는 여기에 분류한다. 냉장고, 통에어 콘디ショ너 등과 같은 가정기기 를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수선소의 작업은 9512나 9519에 분류한다.

522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5220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Painting, 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내부의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를 말한다.

지붕도장은 제외하나 도로공사와 별도로 수행하는 도로선 표시는 포함한다.

내부장식과 연합된 디자인 및 자문서어 비스는 8329에 분류된다.

523 전기공사업 (Electrical Works)

5230 전기공사업

52300 전기공사업
전기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

는 배선, 조명시설,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을 설치하고 수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기발전장치의 조립 및 전탑, 전력송신 및 배전선 건설은 제외한다. (512011에 분류)

524 석공 및 미장공사업

(Masonry Stone Setting and Plastering Works)

5241 석공 공사업 (Masonry and other Stoneworks)

52410 석공 공사업 (Masonry and Other Stoneworks)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에 관련된 석재가공, 석재부착, 석축공사 및 석재공작물 전립공사 등을 말한다.

5242 미장공사업 (Plastering Works)

52420 미장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벽돌 쌓기, 부록 쌓기, 외 설치, 회 바르기, 타일 부착, 대리석 부착, 테라조 공사, 모자이크 공사 등을 말한다.

525 목공공사업 (Carpentry and Flooring Works)

5250 목공공사업

52500 목공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목공공사, 마루 깔기 공사 등을 말한다.

차고문, 나무대문의 설치, 재생목재 마루감을 설치하고 긁어내고 완성하거나 아스팔트, 비닐타일, 리놀륨 등 마루감 설치 활동도 포함한다.

526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52600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526000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합석, 기와, 동, 루핑 등 각종 재료의 지붕잇기와 물받이 등 합석공사를 말한다.

527 구조강 건립업 (Structural Steel Erection)

52700 구조강 건립업

527000 구조강 건립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건물의 철골조의 전설 철근공사 및 건물과 엘레베이터 용 철제프론트 설치, 금속제 건구설치 등의 공사를 말한다.

528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Waterproofing Dampproofing and Fireproofing Works)

5280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52800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방수공사, 방습공사 및 내화공사를 말한다.

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공사업

(Special Trade Contractor Construction.n.e.c)

5291 유리공사업 (Glass and glazing Works)

52910 유리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유리 및 유리끼기 공사를 말한다.

5292 정지공사업

(Excavation and Foundation Works)

52920 정지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땅고르는 공사를 말하며 정지공사에 따른 흙운반, 파기, 암석제거, 파일박기, 호파기, 배수로파기 및 유사공사를 포함한다.

5293 굴정공사업 (Water well Drilling Works)

52930 굴정공사업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음료수용 우물 굴착공사를 말한다.

5294 해체공사업 (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52940 해체공사업

전문직별 기타 구조물을 파괴 또는 해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선박의 해체는 3841에 분류된다.

5299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Other Special Trade Contractor Construction)

52990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으로서 엘레베이터, 이동식 식기 운반기 먼지수집장비, 회전문, 소규모 공장 콘베어 설비, 소규모 소각로, 빌딩의 벽사출 및 증기청소, 화재 대피 시설 설치, 발판전립, 장식금속 공작물 전립 및 설치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가정용 라디오 및 TV 안테나 설치는 9512에 분류된다.

부록 II. 공종분류해설

<일련두기>

- ① 공종분류는 건설업 동태조사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5. 건설업」의 산업 세분류를 각 건설 시공품의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종 분 류	세 분 류
51. 종합건설업	5110. 전물 건설업 5120. 토목 건설업
52. 전문직별공사업	5210. 연관 난방 및 관련공사 5220. 도장/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5230. 전기공사 5240. 석공 및 미장공사 5250. 목공공사 526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 5270. 구조강 건립공사 5280. 방수·방습 및 내화공사 5290. 달리 분리되지 않은 전문직별 공사

- (2) 「5120 토목건설업」 중의 부대 건축공사 (附帶建築工事)는 전부 「5110 건물건설업」에 분류한다.
- (3) 건축물의 분류단위는 동 (棟)이며 하나의 동이 2종 이상의 용도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건평 (建坪)을 점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거주용 (居住用)으로 점용 (占用)되어 있는 건평이 연건평 (延建坪)의 50 % 이상일 때에는 거주용 건축물에 분류하고 50 % 미만일 때에는 타 (他)에 분류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용도가 변하는 건축물은 조사기준 시점에서의 용도에 의하여 분류한다.
- (4) 별도 설명이 없는 한 기존시설의 해체 (解體), 제각 (除却), 이설 (移設), 유지보수 (維持補修) 또는 재해복구 (災害復旧) 공사는 해당 시설의 공사에 분류한다.

산업 세분류	공 분류번호	종 명 (工種名)	비 고
5110 건축건설업	511100	거주용건 축물공사	거주전용 건축물과, 산업용과 거주용이 결합된 건축물로서 거주에 사용되는 부분의 건평이 연전평(延建坪)의 50%이상인 경우의 건축물공사, 단독주택, 아파트
	511901	상업 및 서어비스 업용 건 축물공사	<p>「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 「6.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용 건물과 중분류 「93. 사회서비스업」 중의 소분류 「931. 교육서비스업」용 건물과 중분류 「96. 국제 및 외국기관」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용 사무소, 점포, 작

산업 세분류	공 분류번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p>입장, 창고, 차고등의 건축물 및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용역업」, 「기계 장비 임대업」, 「위생서비스업」, 「조사 및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관」, 「사회복지기구」, 「기업전문 및 노동단체」, 「오락문화서비스업」, 「개인 및 가제서비스업」 용 사무소, 작업장, 차고등의 건축물</p>
511902	광공업 및 건설업용 건축물공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2. 광업 및 채석업」, 「3. 제조업」, 「5. 건설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광업」, 「채석업」, 「제 조업」, 「건설업」 용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차고등의 건축물. ※ 「서비스업」에 속하는 수리 재생업용 건축물은 511901에 분류한다.	

산업분류	공분류번호	종종명 (工種名)	비고
	511903	공무, 문교 용 건축물 공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과 소분류 「931. 교육서비스업」 및 중분류 「96. 국제 및 외국 기관」에 사용되는 건축물.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경 찰, 주한외국공관과 국, 공, 사립 의 각종교육기관의 교실, 사무 소, 창고, 작업장, 차고등의 건 축물.
	511904	공익사업용 및 기타건 축물공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4. 전기, 가스, 수도사업」과 「7.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대분류 「1.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수산업」 과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 ○ 「전기업」, 「가스업」, 「수 도사업」, 「운수업」, 「보관업」, 「통신업」, 「농업」, 「임업」, 「수산업」용 사무소, 작업장, 창고, 차고, 양축사 등의 건축물.

산업분류	공종명	공종명 (工種名)	비고
5120 토목 건설업	512001	치산치수 (治山治水) 공사	<p>하천공사 (河川工事) , 사방 (砂防) 공사, 치산 (治山) 공사, 해안제방, 해안침식대책 (海岸堤防, 海岸侵蝕対策) 공사.</p> <p>예 : 하천의 개수공사, 하천의 유지공사, 하천의 재해복구 공사, 수문 (水門) 설치공사, 기타의 하천공사, 사방조림 (砂防造林) 공사, 사태방지 공사, 부대사방 시설공사, 사방시설의 재해복구공사, 치산공사, 치산시설의 재해복구공사, 부대치산 시설공사, 해안제방공사, 해안침식대책공사, 고조 (高潮) 대책공사, 진파 (津波) 대책공사, 해안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의 해안제방, 해안침식 대책 공사.</p> <p>※ 하천의 춘설 (浚渫) 공사는 512011에, 하천의 유지공사 중의 「涨停」 공사는</p>

산 세 업 류	공 분 류 변 호	공 종 명 (工種名)	비 고
	512002	농림수산시설공사 (農林水產施設工事)	<p>512009에 운하공사는 512011에 분류하고 부대전 축공사는 511904에 분류 한다.</p> <p>농지, 농도, 초지, 농업시설공사 (農地, 農道, 草地, 農業施設工事) 개간, 각척공사 (開墾、干拓工事), 임도 (林道) 공사, 어항, 어초, 양 식시설 (漁港, 漁礁, 養殖施設工事) 예: 관개배수 (灌溉排水) 공사, 객토 (客土) 공사, 기타 토지 개량공사, 농로공사, 농지보존 공사, 농지농업의 재해복구공 사, 펌프, 수문설치공사, 개간 용농도 (農道) 공사, 개간용배 수 (排水) 시설공사, 개간용 수원 (水原) 시설공사, 방재 (防災) 시설공사, 기타의 개 간공사, 제방공사, 간선수로 (幹線水路) 공사, 펌프, 수문 설치공사, 내부개답 (內部開畠) 공사, 재해복구공사, 임도 (林 </p>

사 세 분 류	공 분 류 번호	종 종 명 (工種名)	비 고
			<p>道) 공사, 어항수축공사, 상옥(上屋), 금유시설(給油施設) 공사, 양식장, 설치공사, 기타 어항 시설공사.</p> <p>※ 어항구역내의 해안제방공사는 512001에, 수원(水源)시설 공사중의 「涨停」공사는 512009에, 부대전축공사는 511904에 분류한다. 개간용 농도가 영구적인 도로일 때에는 512003에 분류한다.</p>
512003	도로(道路) 및 교량 공사(도로 포장 포함)	도로(道路) 및 교량 공사(도로 포장 포함)	<p>예 : 토사도(土砂道) 공사, 채석도(碎石道) 공사.</p> <p>沥青(瀝青) 「마카답」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도공사, 「Sheet 아스팔트」도공사, 「아스팔트」유제포장도공사, 「시멘트 콘크리트」도공사, 괴(塊)포장도공사, 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도로의 수리 유지공사, 도로용교량공사, 도로의 포장공사.</p>

설 분류	공 분류번호	종 (工種名)	비 고
			예 : 목교 (木橋) 공사, 콘크리트 교공사, 석교 (石橋) 공사, 고가도로 (高架道路) 공사, 육교 (陸橋) 공사, 입체교차로 (立体交叉路) 공사, 교량의 재해복구공사, 교량의 보수유 지공사, 부대시설공사.
	512004	항만, 공항 (港灣·空 港) 시설공 사	예 : 수역시설 (水域施設) 공사, 외각시설 (外殼施設) 공사, 급유시설 (給油施設) 공사, 임항교통시설 (臨港交通施設) 공사, 항해보조시설공사, 하역 시설공사, 여객시설공사, 보관 시설공사, 항만후생시설공사,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 항만시설공사, 활주로 (滑走路) 공사, 관제시설 (管制施設) 공사, 조명시설공사, 급유시설 (給油施設) 공사, 격납고 (格 納庫) 시설공사, 시설의 재해 복구공사, 시설의 유지, 개수 공사, 기타 공항시설공사.

산업 세분류	공 분류번호	종 (工種名)	비 고
			<p>예 : 창만구역내의 해안보조공사는 512001에 준설공사(浚渫工事)는 512011에, 임항교통시설 중의 철도시설공사는 512005에, 부대건축공사는 511904에 분류한다.</p> <p>활주로의 포장공사는 512003에, 통신시설공사는 전문직별공사에, 공항빌딩 등과 같은 건축공사는 511904에 분류한다.</p>
	512005	철도·궤도 (鐵道·軌道) 시설공사(철강교 포함)	<p>예 : 노선시설(路線施設)공사, 정거장시설공사, 방재시설(防災施設)공사, 전기시설공사(발전송전시설 재회), 신호(信號), 보안(保安) 시설공사, 경비시설공사,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기타 철도, 궤도 시설공사, 철도용 철강교공사.</p> <p>※ 철도용 「터널」 공사는 512011에, 통신시설공사는 전문직별 공사에, 역사(駅舎),</p>

산 세 분 류	공 분 류 번 호	공종명 (工種名)	비 고
	512006	상하수도 시설공사	<p>정비공장 등의 건축공사는 511904에 분류한다.</p> <p>예 : 수원 (水源) 시설공사, 취수 (取水) 시설공사, 도수 (導水) 시설공사, 정수 (淨水) 시설공사, 배수 (配水) 시설공사, 배수 (排水) 시설공사,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p> <p>※ 수원시설공사 등의 「펌」 공사는 512009에, 부대건축공사는 511904에 분류한다.</p> <p>예 : 도수 (導水) 시설공사, 배수 (排水) 시설공사, 양수 (揚水) 시설공사, 촉구 ((溝)) 시설공사, 오물처리 (汚物處理) 시설공사, 복개 (覆蓋) 공사, 기타 하수도 시설공사.</p> <p>※ 부대건축공사는 511904에 분류한다.</p>
	512007	발전·송전· 변전·배전· (發電·送 電)	<p>예 : 수력발전시설공사, 화력발전시설공사, 원자력발전시설공사, 송전시설공사, 변전시설공사, 배전</p>

산업 분류	공분류 번호	종명 (工種名)	비고
		電·變電· 配電) 시설 공사	시설공사. ※ 수력발전시설공사중의 「댐」 공사는 512009에 송전소· 변전소·배전소 등의 건축공 사는 511904에 분류한다. 예: 매립(埋立)공사, 정지(整 地)공사, 법면보호(法面保護) 공사, 배수시설(排水施設)공 사, 급수시설(給水施設)공사, 기타 토지조성공사, 공원시설 공사, 운동경기장시설공사. ※ 항만공사, 간척공사에 속하 는 매립(埋立)공사는 여기 에서 제외한다. 공원, 운동경기장, 사민체육 관, 경마장,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등에 부속되는 건축 물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학교 와 주택에 부속된 운동장과 유원지도 제외한다.
512008	토지조성(土地造成), 공원, 운동 경기장 시 설공사		예: 매립(埋立)공사, 정지(整 地)공사, 법면보호(法面保護) 공사, 배수시설(排水施設)공 사, 급수시설(給水施設)공사, 기타 토지조성공사, 공원시설 공사, 운동경기장시설공사. ※ 항만공사, 간척공사에 속하 는 매립(埋立)공사는 여기 에서 제외한다. 공원, 운동경기장, 사민체육 관, 경마장,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등에 부속되는 건축 물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학교 와 주택에 부속된 운동장과 유원지도 제외한다.
512009	댐공사		예: 가체절(假締切)공사, 가배 수로(假排水路)공사, 공사용

산업 세분류	공 분 류 번 호	종 종 명 (工種名)	비 고
			도로공사, 기초굴착 (基礎掘鑿) 공사, Grouting 공사, 「엠」 축조공사, 여수로 (餘水路) 공사, 방수로 (防水路) 공사, 기타 「엠」 시설공사.
	512010	기계 설치 공 사	예 : 적조기 · 방적기의 설치공사, 아이스크림 가공기계의 설치공 사, 에스카레이타 설치공사, 기 중기 설치공사 등
	512011	기타토목 공 사	예 : 「턴넬」 공사, 해저 「턴넬」 공 사, 지하도, 윤하공사, 준설공사, 색도설치공사 등 ※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토목 공사는 여기에 분류한다.
전문작별 건설업	5200 521000	연판 · 난방 및 관련공 사	연판, 난방 및 공기조절 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 냉방공사, 환기공사 및 보일러 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도 포함.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폐조 설치, 변소공사 등은 포함

산업분류	공종명	비고
세분류번호	(工種名)	
		하나 하수관이나 하수처리 플랜트의 설치는 제외한다. 건설활동과 연합해서 수행되는 관공공사는 여기에 분류한다.
52200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내부의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지붕도장은 제외하나 도로공사와 별도로 수행하는 도로선 표시는 포함한다.
523000	전기공사	배전, 조명시설,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수선. 전기발전 장치의 조립 및 전립, 전력 송전 또는 배전선 건설은 제외(512007에 분류)
524000	석공 및 미장공사	건물이나 구조물에 관련된 석재가공, 석재부착, 석축공사 및 석재공작물 건립공사와 벽돌쌓기, 부록쌓기, 외설치, 화바르기, 타일부착, 대리석부착, 데라조공사, 모자이크공사 등

산업 세분류	공 분류번호	종 (工種別)	비 고
	525000	복공공사	복공공사, 마루깔기공사 등 차 고문, 나무대문의 설치, 재생목 재, 마루감을 설치하고 깎아내 고 완성하거나 아스팔트, 비닐 타일, 러늄륨 등 마루감 설치 도 포함.
	526000	지붕잇기 및 합석공 사	합석, 기와, 동, 루핑 등 각종 재료의 지붕잇기와 물받이 등 합석공사
	527000	구조강건립 공사	건물의 철골조의 건설, 철근공 사 및 건물과 엘레베이터용 칠프론트 설치, 금속제 건구 설치 등의 공사
	528000	방수·방습 및 내화공 사	방수공사 방습공사 및 내화공 사
	529000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전문직별 공사	유리공사, 정지공사, 굴정공사, 해체공사

지정통계 제29호

1979년

건설업수주통계조사지침

목 차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연혁	3
다.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3
라. 조사범위	4
마. 조사대상처	4
바. 조사항목(사항)	4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5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5
나. 사업체 번호	6
다. 국내 전설공사 수주내역	6
3. 조사원 유의사항	9
가. 면 접	9
나. 실사	10
다. 유고사업체처리	11
라. 검토	13
마. 제출	14
부록 I. 발주자별 분류해설	15
부록 II. 공종별 분류해설	18

부록 III. 연습문제	21
부록 IV.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양식	26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건설업 수주조사는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중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서로 17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중별 발주자별로 조사 집계함으로써 건설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표 결과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 경영관리 및 건설행정 등에 관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공여할 수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예고지표 구성체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발주의 기계 수주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 경기선행지표가 된다.

나.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 26일 지정통계 제 29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1976년 7월 분 조사부터 매월 「건설업 수주동향」 속보로서 공표하고 있다.

다.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로서, 조사원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주액조사를 완료하여 지도원에게 매월 17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하고 지도원은 매월 20일까지 당월에 조사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상주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체식방법을
병용한다.

라.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외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단,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일지라도 외국건설업체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마. 조사대상처

건설부찰판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으로 170 개사를 대
상처로 하되 면허취소, 폐업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한 경
우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 (통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바. 조사항목

- (1)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자기공사제회액 포함)
- (2)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2. 조사항목해설과 기입요령

가능한 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항목들의 정의와 기입요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므로 다음 유의사항과 기입요령, 항목해설을 숙지한 후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는 조사완료후 분류, 심사, 짐계 등을 거쳐 영구 보존되므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주의하여 기입한다.

- (1)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4와 6, 0과 6, 3과 5, 7과 9, 4와 9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3)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 (4) 오기된 것을 정정표자 할 때는 청색 펜으로 오기된 곳에 두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5)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첨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6) ※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 (7)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 날이 부족할 경우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대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 (8)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염두해야 한다.

나. 사업체번호

사업체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사업체번호 기입을 누락하거나 중복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1) 도급공사계약

Ⓐ) 조사대상월중 발주자와 계약체결한 모든 건설공사내역을 공사별로 기입한다.

Ⓑ) 국내 타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 수주기준일은 최종계약처리일이다.

즉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작성중 또는 계약체결전의 일부 착공 등은 수주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

(2) 자기공사계획(또는 착공)내역

Ⓐ) 자기공사라함은 조사대상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도기업을 위한 공사의 경우도 포함하여 공사별로 기입한다.

Ⓑ) 자기공사의 수주기준일은 계획이 확정된 때 즉, 조사대상건설업체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계획확정없이 착공하는 경우에는 착공당시가 수주기준일이 되며 개략적인 예정공사액을 조사하고 계획이 확정될 때 계약변경처리 형식으로 예정공사액을 수정하면 된다.

(3) 공사명 및 세분류공종명

(1) 공사명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특히 세분류공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정식공사명칭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공종분류에 대한 확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분류 공종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기입하되 부호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2)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인 경우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라 함은 군부대의 공사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민간등의 건설공사도 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사명은 00공사라고만 기입하고 토목공사인 경우의 공종분류는 기타 토목으로 분류하여 기입한다.

(4) 발주자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1) 계약상에 나타난 발주자 정식명칭을 기입하고 세분류 발주자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 기입하고 부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원발주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기입 보고해서는 안된다.

(3) 방위와 관련된 공사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입한다. 예컨대 발주처가 군부대인 경우 군부대명 대신 "정부"로, 세분류 발주자명도 "정부"로 기입하고 주한외국군부대이면 "주한외국기관"으로 각각 기입한다.

(4)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자기공사인 경우는 그 방제회사명을 기입한다.

(5) 수주액

(4)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 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계약액 뿐만 아니라 발주자급 원자재지급계획액도 포함한다.

(5) 자기공사인 경우는 자기공사계획 확정시 (또는 착공시) 그 공사에 소요될 총공사비가 수주액이 된다.

(6) 발주자가 공사계약체결시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원자재를 계약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발주자 원자재 지급계획액에 기입한다.

(6)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1) 해외수주는 계약당시의 외화(미국화로 환산) 및 환율(한국 은행·집중기준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치로 기입하되 외화(미국화로 환산)는 천불, 원화환산치는 백만원 단위로 해당년에 기입 한다.

(2) 해외수주는 발주자급원자재 지급계획액을 포함치 않는다.

(7) 계약변경 또는 자기공사의 계획확정 등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된 수주액 내역을 공사건별로 조사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 앞에 (+)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 기호를 붙여 기입하고 동 내역을 청요년에 기재한다. 단, 동 증감액은 기조사된 원공사의 증감분으로서 견수는 기조사되었으므로 공사건수에서는 제외 하여야 한다.

3. 조사원 유의사항

가. 면접

- (1) 조사원은 대상업체를 방문, 응답자와 면담할 때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후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2) 조사표를 제출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성의있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기재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 염수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안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기일과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한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고,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4)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기재할 경우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파의 관계 등을 미리 감안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조사표 기록부를 휴대 방문하였을 시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 (5) 참고로 통계법 제7조, 8조, 9조는 다음과 같다.

통계법 제7조(실지조사)

-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통계외 조사 확인을 위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겉사 또는 조사자료 제출의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9 조 (통계 목적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실사

(1)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은,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 될 경우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 이전까지는 조사표 기입을 완료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표 작성시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3)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공종명 및 발주자명이 한글(영문으로 기입되었을시는 한글로 주기)로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세분류공종명 및 발주자명은 하단의 세분류공종명 및 발주자명 보기표를 참조하여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일자, 착공, 완공, 예정일자의 누락여부 및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둘째, 대상사업체중에는 해외공사 수주액자료 제공처가 국내공사 수주액자료를 제공하는 부서(흔히 업무부)와 동일치 않아 해외공사 수주액을 조사 누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해외공사 수주면허를 소지한 대상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내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외국부, 기획관리실등)에도 방문, 문의 또는 확인하여 해외수주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세째,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국군부대, 유엔군 등)에 관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 기입방법대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기록부 기록시에도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에 관한 조사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기입방법대로 기입하여 보완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비록 1전의 수주액이라도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누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파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응답불응 사업체

① 1차적으로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그래도 계속 불용하면 소속과 부장을 방문 협조를 구한다.

- (내)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 도 지부에 축면 지원 요청토록 한다.
- (다) 건설협회 시·도 지부의 종용에도 불용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예정자, 협회 종용일, 기타 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2) 휴업 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대외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뿐 응찰, 기획, 계약 등 내부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원은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 조사표 청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지도원은 조사원의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중앙에 그 사유를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 사업체

담당한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체 관할 시·도 건설협회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지방통계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이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액 순위상의 차순위업체를 새로이 대상처로 선정하여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므로

폐업을 확인한 즉시 보고되어야 추가로 대상처를 선정하여 당해월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전사업체

동일 조사구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해야 되고 동일 지도구(시·도)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에게 조속 연락하여 해당월에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

타지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속지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도원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된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라. 검 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한다.

- (1) 조사기준인 년, 월분이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사업체번호 기입이 누락 또는 중복이 안되었나 검토한다.
- (2) 모든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이므로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입이 되었나 검토한다.
- (3) 공사명과 발주자명의 내용이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 및 발주자명의 보기표를 참조하여 기입한 세분류 공종명 및 발주자명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4) 국내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이 잘못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 (5)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하여 원발주자(실수요자)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잘못 기입되었나
확인 검토한다.

- (6)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 세분
류란에 증감액분을 기입하고 증액 시에는 (+) 기호를 감액 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분앞에 표시되었는가 검토한다.
- (7)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

마. 제출

- (1) 매월 15일까지는 조사표를 회수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접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부록 I〉

발주자별 분류해설

1. 국내 공공부문 발주

01. 정부

* 중앙 각원, 부,처,청, 임법부, 사법부, 중앙부처의 지방주재기관,
군부대, 국립학교, 관련위원회

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도, 시군, 구, 교육위원회, 시군교육청,
공립학교(사립학교는 비제조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 서비스업에
분류)

03. 국영기업체

정부 현업관서를 제외한 국영기업체로 각종 공사, 국채은행, 주식
회사 등

특수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공사 :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광업재련공사, 대한준설공사,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국제판광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해운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조선공사는 민영화되었으므로 민간제조업중 "기재"로
분류한다).

주식회사 : 국정교파서주식회사, 한국전력, 한국비료, 포항제철
(호남비료, 충주비료, 대한염업 등은 민영화되었으므로
여기서 제외)

기 타 : 토지금고, 은행감독원, 한국감정원

04.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 조합(농협, 어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영조물법인, 각종 공공연구소, 대한적십자사.

2. 국내민간발주

(1) 제조업

01. 음식료품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닉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물기름제조가공, 도정, 세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업, 열음제조업, 조미료생산업

02. 의류제조

직물, 가방제조, 편직, 어망, 로푸, 방직, 제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제조, 자수업 (E m b r o i d e r i o s), 뜯자리

03. 화학식유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프라스틱, 인조섬유,
도료, 안료, 의약제품, 비누,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

04. 철강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철금속제련

05. 기 계

금속제품, 철물제조, 농기구, 구조물, 장치들, 철판, 양철판,
합금, 케이블, 철선, 나사, 도굴, 기계제조, 장비제조, 전기통신,
기계기구,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과학계측기,
의료용기구, 시계, 안경, 전자제품

06. 기타제조

제재, 제지,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철기, 사무용품, 고급품, 시멘트

2) 비제조업

01. 운송, 보관

운수, 창고, 파이프라인 운송, 수상운송, 항만시설대여,
항공운수 보관업

0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비스

일반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부동산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비스, 법무회계서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 건축설계사무소, 광고, 민영방송, 각종 협회,
통신,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03. 부동산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04.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비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검토, 석면, 장석, 암석, 석재채취

05. 기타 비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부록Ⅱ〉

공종별 분류해설

1. 건축

① 주택

거주전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 주합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의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는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②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욕탕, 이·미용소, 방송국, 시장.

③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건물(주택, 기숙사, 병원 제외)
발전소, 변전소,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④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기타 보호시설)
관공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기상대 등)

⑤ 기타 건축

철도, 부두, 공항(기관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 제건물,
격납고). 단, 창고, 제외.

교정시설(형무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기 타(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 건물, 화장장)

2. 토 목

① 치산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지방, 해안침식 대책, 개수공사.

② 농림수산

농업시설공사, 개척, 개간, 관개, 어항, 양식 시설.

③ 도로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④ 항만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금유설비, 저탄장, 저목장, 활주로.

⑤ 철도, 체도

철도, 정거장, 지하철, 철도교량.

⑥ 상·하수도

취수, 도수, 정수, 배수 등 설비공사, 측구, 오물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도.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시설, 취수로, 옥외전화공사

⑧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조경공사

⑨ 빔

댐시설, 취수설비 등.

⑩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중기설치

⑪ 기 타

벤넬공사, 준설, 색도.

3. 전문직별

연판난방(연판, 냉난방공사, 환기, 냉방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건조장치, 제빙장치, 기타매판)

도장 도배, 실내장식(시멘트 뿐어붙이기, 단청공사)

전기, 통신(옥내배전, 조명시설: 옥내건축물, 옥내전화공사)

석공미장(석재가공부착, 부록 쌓기, 타일부착)

목공(목공, 마루깔기)

지붕잇기, 합석공사.

구조강조립(철 팔조건설, 판금, 금속제작수, 비상계단공사)

방수, 방습, 내화.

기타(유리, 굴정, 해체, 굴뚝설치, 열절연, 수진장치, 온돌, 비계, 창호,
축도, 조원)

단,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 환기, 금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공사분류에 포함시킨다.
또, 부속건물(창고, 차고 등)이나 문따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
류로 분류한다.

〈부록III〉

연습문제

1. 진위형

- 가. 수주액은 원도급공사 수주액만을 조사한다. ()
- 나. 발주자별 세분류의 분류가 까다로운 경우 무조건 "기타" 항목으로 처리한다. ()
- 다. 조사기간은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조사표는 15일까지 지방통계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20일까지 중앙에 편차토록 한다. ()
- 라. 해외수주는 \$로 기입한다. ()
- 마. 대규모 공사액의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

2. 연결형

가. 발주자 분류

- | | |
|----------------|-----------|
| a. 한국전력주식회사 | ① 정 부 |
| b. 조선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 |
| c. 협업우산 | ③ 국영기업체 |
| d. 신촌맨션아파트주식회사 | ④ 기타 공공단체 |
| e. 프랑스대사관 | ⑤ 음식료품 |
| f. 대한어망주식회사 | ⑥ 섬유류 |
| g. 경인에너지 | ⑦ 화학섬유 |

- | | |
|---------------|-------------------|
| h. 대한통운 | ⑧ 철 강 |
| i. 서울대학교 | ⑨ 기 계 |
| j. 중앙대학교 | ⑩ 기타 제조업 |
| k. 서울시립농과대학 | ⑪ 운수 보관 |
| l. 셈표간장 | ⑫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
| m. 대덕군 농업협동조합 | ⑬ 부동산 |
| n. 부산 주철주식회사 | ⑭ 광 업 |
| o. 김 철 수 | ⑮ 기타 비제조업 |
| p. 강원탄자 | ⑯ 주한 외국기관 |

나. 발주자 분류

- | | |
|-----------|----------|
| a. 삼양타이어 | ① 음식료품 |
| b. 오리엔트시계 | ② 섬 유 |
| c. 성창합판 | ③ 화학석유 |
| d. 충남방직 | ④ 철 강 |
| e. 진로주조 | ⑤ 기 계 |
| f. 부산파이프 | ⑥ 기타 제조업 |

다. 발주자 분류

- | | |
|-------------|-----------|
| a. 호남정유 | ① 정 부 |
| b. 대한석유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 |
| c. 전국경제인연합회 | ③ 국영기업체 |
| d. 리라국민학교 | ④ 기타 공공단체 |
| e. 덕수국민학교 | ⑤ 운송보관 |

- | | |
|-----------|-------------------|
| f. 백마부대 | ⑥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
| g. 대한항공 | ⑦ 부동산 |
| h. 삼익주택 | ⑧ 화학석유 |
| i. 대한적십자사 | ⑨ 기타 비제조 |
| | ⑩ 주한외국기관 |

라. 공종 분류

- | | |
|---------------|----------------------|
| a. TBC방송국 | ① 치산치수 |
| b. 시립박물관 | ② 농림수산 |
| c. 시영아파트 | ③ 도로교량 |
| d. 대한통운창고 | ④ 항만공항 |
| e. 사방공사 | ⑤ 철도궤도 |
| f. 낙동강철교 | ⑥ 상·하수도 |
| g. 서부위생처리장 |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
| h. 춘설 | ⑧ 토지조성, 공원, 경기장 |
| i. 살수시설 | ⑨ 댐 |
| j. 당인리 화력발전소 | ⑩ 기타 토목 |
| k. 어린이대공원 | ⑪ 주택 |
| l. 인천항도크 | ⑫ 사무실, 접포, 숙박시설, 오락장 |
| m. 미역양식장 | ⑬ 공장, 창고 |
| n. 대구, 마산고속도로 | ⑭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
| o. 인천항도크 | ⑮ 기타 건축 |
| p. 안동댐 | ⑯ 전문직별 공사 |
| q. 불국사 재건공사 | |

마. 공종 분류

- a. 제일 이발소
- b. 농협창고
- c. 체육관
- d. 기숙사
- e. 미술관

- ① 주 택
- ② 사무실, 접포, 숙박시설, 오락장
- ③ 공장창고
- ④ 학교병원, 관공서 청사
- ⑤ 기타 건축

3. 기입형

A건설주식회사의 '76년 7월중의 건설행동은 아래와 같다.

8월조사시 본 회사의 7월분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아라(사업체 번호는 11-99임).

가. A건설회사의 산하기관인 B맨션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15층짜리 건물을 13억원을 들여 직영으로 짓기로 계획을 확정하다(예산공기는 '76년 7월부터 '77년 6월임).

나. 철도청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서울역 정거장을 말주하여 A건설회사에서 2억5천만원에 낙찰, 계약을 체결하다(공사기간은 '76.8월부터 '77.8월까지임).

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울산 앞바다에 금유설비공사를 A건설회사에 1억원으로 발주하다(공기는 '76.9부터 1년간).

라. A건설회사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건물을 '76.10월부터 5개월 간 11억원으로 짓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마. 한국방송공사 제2스튜디오 건설을 위해 A건설회사가 1천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다만 소요 원자재 시멘트 50,000포대(1포대당 300원) 철근 100t(1톤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다(공기는 '76. 8부터 6개월간임).

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조계사에 빙난방 장치를 위해 A건설회사에 5백만원에 발주하다(공기는 '76. 7월부터 2개월간임).

사. 농협중앙회는 서울농협을 건설하기로 하고 A건설회사에 3억원에 발주하다(공기는 '76. 8월부터 '77. 8월까지).

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정지공사를 A건설회사가 3천만원에 도급 받다(공기는 '76. 9월부터 3개월간).

자. 김씨는 점포임대업을 위해 A건설회사에 2천5백만원에 5층 건물을 짓기로 발주하였다(5월 10일).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 인건비 상승으로 A건설회사는 계약액 변경을 요구하여 7월 20일에 3천만원으로 수정계약체결을 하였다.

차. 리라국민학교는 동교내 기숙사가 오래되어 동기숙사 해체공사를 의뢰코자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던바 A건설회사에 2천만원에 낙찰 되다.

카. '76.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공사 입찰에 응찰한 결과 1억\$에 낙찰되어 '76. 10월부터 착공하여 '78년 4월에 완공키로 7월에 계약을 체결하다('76년 7월 말일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은 1\$당 48.4원임).

타. A건설회사는 국내 ××비행장 설치공사를 '76. 8월부터 '76년 12월까지 15억원에 완공키로 하고 주한 국동 유엔군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다.

〈부록IV〉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 양식

1. 전위형

가. (X) 나. (X) 다. (O) 라. (X) 마. (O)

2. 연결형

가.	a - ③	b - ⑨	c - ⑩	d - ⑫
	e - ⑯	f - ⑥	g - ⑦	h - ⑪
	i - ①	j - ⑫	k - ②	l - ⑤
	m - ④	n - ⑧	o - ⑯	p - ⑭
나.	a - ⑤	b - ⑤	c - ⑥	d - ②
	e - ①	f - ④		
다.	a - ⑧	b - ③	c - ⑨	d - ⑥
	e - ②	f - ①	g - ⑤	h - ⑨
	i - ④			
라.	a - ⑫	b - ⑭	c - ⑪	d - ⑬
	e - ①	f - ⑤	g - ⑥	h - ⑩
	i - ⑯	j - ⑦	k - ⑧	l - ④
	m - ②	n - ③	o - ④	p - ⑨

q - ⑮

p. e - ⑯ b - ⑯ c - ⑯ d - ⑯

e - ⑯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여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동계
제29호

건설업 수수동계 조사표

제출기한: 매월 15일

(1976년 월분)

사업체 번호

11-58

I. 수주총액 (외부계약액+직영공사액)

(단위: 천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공종별 발주자별	1. 건축						2. 토목												3. 전문직별			4. 합계	
	① 주택	② 사무실 숙박시설, 오피스텔 장	③ 공장 창고	④ 관공서, 학교, 병원	⑤ 기타 건축	⑥ 소계	① 차 차 수	② 농 림 수	③ 도 로 교 량	④ 항 만 항	⑤ 철 도 도	⑥ 상 하 도	⑦ 발전, 충전 공 원	⑧ 토지조성, 방 변 경 기 장	⑨ 렘 기 설 치 토	⑩ 기 자 치 토	⑪ 소 계 금 액	⑫ 전 문 직 별 금 액	(1+2+3)				
1. 국 내 공 부 문	정부 01					26.000	14.000											130.000	240.000				
	지방자치단체 02																						
	국영기업체 03	20.000						10.000										10.000	30.000	10.000			
	기타공공단체 04	10.000						10.000										10.000	10.000				
	제 09	10.000				10.000	3.288.000										10.000	3.288.000	10.000				
2. 국 내 민 간 부 문	음식료품 11																						
	섬유류 12																						
	화학석유 13																						
	철강업 14																						
	기계류 15																						
	기타제조업 16																						
	소계 77																						
3. 국 내 외 국 기 관	운수보관 21																						
	상업·서비스 22		20.000					10.000										10.000	30.000				
	금융·보험 23	10.000						10.000										10.000	10.000				
	부동산 24	10.000						10.000										10.000	10.000				
	기타비체조업 25																						
	소계 88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				
	제 99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				
4. 국내외국기관 00																							
5. 해외수출 01																							
6. 총계 (4+5) 99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				

* 본 표의 일부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신청용지(44-8176)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제출 기관은 기록방법을 단정히 합니다.

II.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 (직영공사제외)

*모든 공사 내역을 기입할 것

III. 직영공사 (계획 또는 착공) 내역

총 세 분 류	공 사 명	발 주 자 명	발주자와주업무 (주생산품)	총 공 사 액 (천원)
기구류	제작설비제조업체	제작설비제조업체	제작설비제조업체	1,300,000

기입시 주의사항

1.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2. 본 조사의 수주액에는 ①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 ② 발주자금 원자재지급 계획액 (해외공사 수주액 조사시에는 제외, 계약당시 실가로 환산) 및 ③ 조사대상 건설업체, 모기업 또는 산하기업 외 영업공사액도 포함한다.
 3. 모든 건설공사 수주 내역은 조사표 후면의 Ⅲ. 또는 Ⅳ.에 공사건별로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 전면의 1. 수주액의 합계금은 조사표 후면의 Ⅲ. 및 Ⅳ.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4. 적정공사는 계획액은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시는 착공액으로 한다.
 5. 국내 대 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은 조사내장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하도급 받은 경우일지라도 외국 건설업체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내장이 된다.
 6. 해외수주액은 계약당시와 차운(한국은행 징중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치로 기입한다.
 7.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일의 증감액만을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 세분류란에 기입하며 증액시에는 (+) 기호를, 감액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문 앞에 표시하고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8. 단 한건의 수주액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되 만일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을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서 조작 조사 기입하고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9.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10. Ⅲ.항에서 1.의 경우 발주자란에 발주구자명을 기입한다.
 11. Ⅳ.항의 발주자명은 방재회사의 건설공사를 계약에 의하지 않고 착공한 해외 실수요 회사여야 하며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수주통계조사지침

1 9 7 8

— 목 차 —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연혁	3
다. 조사 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3
라. 조사범위	4
마. 조사대상처	4
바. 조사항목 (사항)	4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5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5
나. 사업체 번호	6
다. 수주총액	6
라.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	8
마. 직영공사 계획(또는 착공)내역	9
바. 방위화 관련된 공사의 기입방법	9
 3. 조사원 유의사항	11
가. 면 접	11
나. 실 사	12
다. 유고사업체 처리	14
라. 검 토	16
마. 제 출	17

부록 I.	발주자별 분류 해설	19
부록 II.	공종별 분류 해설	23
부록 III.	연습문제	27
부록 IV.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 양식	33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건설업 수주조사는 건설부장관 명의업체 중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서로 17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의 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별·발주자별로 조사·집계함으로써 건설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표 결과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경영 관리 및 건설행정 등에 관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공여할 수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예고지표 구성계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 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발주의 기계·수주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 경기·선행지표가 된다.

나.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 26일 지정통계 제 29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1976년 7월분 조사부터 매월 「건설업 수주동향」속보로서 공표하고 있다.

다. 조사 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 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로서, 조사월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주액 조사를 완료하여, 지도원에게 매월 17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하고 지도원은 매월 20일까지 당월에 조사표가 도착 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상주 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체식 방법을 병용한다.

라.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외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단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 일자로 외국건설업체나 국내 종합무역상사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마. 조사대상처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으로 170개 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취소, 폐업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통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바. 조사항목

- (1) 공종 및 발주자별 월중 수주총액
- (2)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
- (3) 직영공사(계회 또는 학공)내역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가능한 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항목들의 정의와 기입요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므로 다음 유의사항과 기입요령, 항목해설을 숙지한 후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는 조사완료후 분류, 심사, 집계 등을 거쳐 영구 보존되므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기입한다.

- (1)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를 쓰되 4와 6, 0과 6, 3과 5, 7과 9, 4와 9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3) 금액의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 (4) 오기된 것을 정정코자 할 때는 청색 펜으로 오기된 곳에 두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5)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척요

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6)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기입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공종별 세분류상의 차오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세분류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발주자 및 공종별 세분류 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 (7)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나. 사업체 번호

사업체 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사업체번호 기입을 누락하거나 충북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주총액

(1) 본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서 월중 수주액을 공종별 및 발주자별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2) 수주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3)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에는 공사계약액 뿐만 아니라 발주자급 원자재 자급계획액과 직영공사 계획확정시(또는 착공시)의 총공사액도 포함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계약액외에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별도로 지급키로 할 경우에, 지급키로 한

원자재를 계약당시 식가로 환산하여 그 환산치를 반드시 계약에
에 합산, 조사표 전면 「공종 및 발주자별 수주총액」란에 기입
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건설업체, 모기업 또는 산하기업의 직영공
사 계획확정서(또는 착공시)의 총공사액도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
계약액에 포함하여 조사표 전면 수주총액란에 공종 및 발주자별
로 분류 기입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계획액과 직영공사 계획확정서(또는
착공시)의 총공사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수주액 조사에서 누락할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은 조사대상에서 제
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 일자라도 외국건설업체나 국내
종합무역상사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5)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
를 발주자로 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원발주처가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
이라고 기입 보고해서는 안된다.

(6) 수주기준일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 처리일이 수주기준
일이 된다.

즉, 용찰증에 있거나 설계 작성중 또는 계약 체결전의 일부 차
공 등은 수주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영공사인 경우는 직영공사 계획확정시가 수주기준일이 된다.

계획확정서와 같은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단, 누락된 계획액은 포착되는 월에, 늦어도 착공시에는 조사되어야 한다.

(7) 계약변경시 기입요령

계약변경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해당 월의 조사시에 증감액된 만큼만을 공종 및 발주자 각 세분류 란에 기입하여 증액시에는 증액분 앞에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기호를 붙여 기입하고 동 내역을 체요란에 기재한다.

(8) 해외 수주

(1) 해외 수주는 계약당시의 환율(한국은행 집중 기준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치로 기입한다.

(2) 해외 수주는 발주자금 원자재 지급계획액을 포함치 않는다.

라.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

(1) 발주자와 계약체결한 모든 건설공사 내역을 공사별로 기입하여 공사명, 발주자명 및 수주액을 정확히 기입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자재 지급계획액을 수주액에 포함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수주에 있어서 발주자(외국)가

자급기로한 원자재 지급계획액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3) 공종 세분류란에는 부록2의 공종별 분류해설을 참고하여 세분류항목의 어디에 속하는가를 확인하여 기입하며 발주자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 생산품명을, 발주자가 비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요 업무명을 기입한다.

마. 직영공사 계획(또는 착공)내역

- (1) 조사대상 건설업체,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의 직영공사액도 수주액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다. 따라서 직영공사액도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별 "수주총액"란에 포함시켜 기입하여야 한다.
- (2) 직영공사는 계획확정시의 총공사액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계속 누락되었다면 착공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직영공사 착공액이 있나를 묻고, 있는 경우, 계획액으로 포착되지 않은 착공액을 조사하면 된다.
- (3) 직영공사인 경우의 수주액은 직영공사 계획확정시(또는 착공시)의 그 공사에 소요될 총공사액이 수주액이 된다.
- (4) 발주자명은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직영공사가 아니고 산하 기업 또는 모기업의 직영공사일 경우는 그 방계회사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바.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명과 공사명을 다음과 같이 예외로 기입하고 보안에 특허 유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국군부대인 경우

- (1)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별 «수주총액»란에는 해당 수주액을 기입한다.
- (2) 조사표 후면의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란에는
- ① 발주자명을 군부대명 대신 «정부»라 기입한다.
 - ② 공사명란은 기입 않도록 하여 그대로 흰색으로 둔다.
 - ③ 공종제 분류란은 조사표 전면 «수주총액» 항목란에 세분류 한 발주자명과 공종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기입예 : (발주자명) (공종명)
1 2 3 4 부대 (X) 비행장설치공사 (X)
정부 (O) 항만, 공항 (O)

(2) 발주자가 주한 외국인인 경우

- (1) 조사표 전면의 «수주총액» 항목란은 공종이 건축인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세분류한 발주자 및 공종별로 별도로 분류 기입하여야 하나 공종이 토목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 토목»으로 분류하여 기입한다.

- (2) 조사표 후면의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란에는
- ① 발주자명을 주한 외국인(유엔군 부대) 명 대신 «국내 외국기관»이라 기입한다.
 - ② 공사명란과 공사 세분류란은 발주자가 국군부대일 경우의 기입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기입예 : (발주자명) (공종명)

국통유엔군사령부 (X) 오산비행장진입로포장공사 (X)

국내외국기관 (O) 기타토목 (O)

3. 조사원 유의사항

가. 면접

- (1) 조사원은 대상업체를 방문, 응답자와 면접할 때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후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2) 조사표를 제출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성의있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기재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 업수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안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기일과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할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고,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4) 직접 면접에 의해 조사표를 기재할 경우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관계 등을 미리 잡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조사표 기록부를 휴대 방문하였을 시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5) 참고로 통계법 제7조, 8조, 9조는 다음과 같다.

통계법 제7조(실지조사)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통계 조사 확인을 위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료 제출의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9조(통계목적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실사

(1)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은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 이전까지는 조사표 기입을 완료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표 작성시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3)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빌주자 및 공종명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빌주자 및 공종이 잘못 분류되었거나 애매할 때에는 부록 I, II를 참조하고 사업체에 세밀하게 문의하여 구분토록 하고 그래도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빌주자 및 공종을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기입토록 한다.

둘째, 대상 사업체중에는 해외공사 수주액 자료 제공처가 국내공사 수주액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흔히 업무부)와 동일치 않아 해외공사 수주액을 조사 누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해외공사 수주면허를 소지한 대상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내공사 수주액 자료 제공부서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수주액 자료 제공부서(외국부, 기획관리실증)에도 방문, 문의 또는 확인하여 해외 수주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세째, 방위와 관련된 빌주자(국군부대, 유엔군등)에 관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 기입방법대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기록부 기록시에도 방위와 관련된 빌주자에 관한 조사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기입방법대로 기입하여 보완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찌, 비록 1건의 수주액이라도 그 금액이 를 경우에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누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거나 일월조사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과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응답불응 사업체

(1) 1차적으로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과 부장을 방문 협조를 구한다.

(2)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시·도·지부에 즉 면 지원 요청토록 한다.

(3) 건설협회·시·도·지부의 종용에도 불응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 예정자, 협회 종용일, 기타 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2)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

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대외적
인 전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 등 내부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원은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 조사표 청요
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지도원은 조사원의 보고를 받
음과 동시에 그 사유를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업체

담당한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체 판
할 시·도 전설협회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지방통계사무
소장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이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액 순위상의 차순위업체
를 새로이 대상처로 선정하여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므로 폐
업을 확인한 즉시 보고되어야 추가로 대상처를 선정하여 당해
월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전 사업체

동일 조사구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해야 되고
동일 지도구(시·도)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에게 조속 연락하여 해당 월에 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타지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속지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도원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된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라. 검 토

접수원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한다.

- (1) 조사기준인 년·월분이 정확히 기입되었다 확인하고 사업체 번호 기입이 누락 또는 중복이 안되었나 검토한다.
- (2) 모든 금액단위는 「천원」단위이므로 「원」단위로 잘못 기입이 되었나 검토한다.
- (3) 공종 및 발주자별 세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 (4) 항목별 합계의 등식관계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 (5) 국내 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이 잘못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 (6)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하여 천 발주자(실수요자)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잘못 기입되었나 확인 검토한다.
- (7)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 세분류란에 증감액분을 기입하고 증액시에는 (+) 기호를 감액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분앞에 표시되었는가 검토한다.

(8)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별 세분류 수주액란에 조
사표 후면의 내역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표 전
면의 수주총액의 합계가 조사표 후면의 II, 국내외 건설
공사 수주내역의 수주합계액 및 II, 직영공사(계획 또는
착공)내역의 직영공사 총공사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
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검토한다.

(9)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

마. 제출

- (1) 매월 15일까지는 조사표를 회수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원은 접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일까지 중앙
에 제출해야 한다.

〈부록 I〉

발주자별 분류해설

1. 국내 공공부문 발주

0 1. 정부

중앙 각원, 부, 차, 청, 입법부, 사법부, 중앙부처의 지방주재기관,
군부대, 국립학교, 표현위원회.

0 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자도, 시군, 구, 교육위원회, 시군교육청,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비제조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 서비스업에
분류)

0 3. 국영기업체

정부 현업관서를 제외한 국영기업체로 각종 공사, 국책은행, 주
식회사 등

특수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의학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공사 : 대한손해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광업제련공사, 대한준질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국제광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해운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조선공사는 민영화되었으므로 민간제조업중 「기계」
로 분류한다).

주식회사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전력, 한국비료, 포항제철

(호남비료, 충주비료, 대한염업 등은 민영화되었으므로
여기서 제외).

기타 : 토지금고, 은행감독원, 한국감정원.

04. 기타

공공부리를 위한 각종 조합(농협, 어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영
조물법인, 각종 공공연구소, 대한적십자사.

2. 국내민간발주

(1) 제조업

01. 음식료품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
물기름제조가공, 도정, 제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업, 염음제조업, 조미료생산업.

02. 의류제조

직물, 가방제조, 편직, 어망, 토푸, 방직, 계사, 방직, 표백, 염색,
비웃, 가죽제조, 자수업(Embroiderios), 드자리

03. 화학석유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플라스틱, 인조섬유,
도료, 안료, 의약제품, 바누, 향료, 쪽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

04. 철강

제철, 제강, 암연, 주물, 기타 비철금속제련

05. 기계

금속제품, 철물제조, 농기구, 구조물, 장치물, 철판, 양철판,
합금, 케이블, 철선, 나사, 도글, 기계제조, 장비제조, 전기통신,
기계기구,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과학제작기,
의료용기구, 시계, 안경, 전자제품

06. 기타제조

제재, 제지,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칠기, 사무용품, 고급품, 시멘트

(2) 비제조업

01. 운송, 보관

운수, 창고, 파이프 라인운송, 수상운송, 항만시설대여,
항공운수 보관업

0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비스

일반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부동산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어비스, 법무회계서어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 건축설계 사무소, 광고, 신문, 민영방송,
각종 협회, 흥신,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03. 부동산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04. 광업

석탄, 원유, 철연가스, 채광, 비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전토, 석면, 장석, 암석, 석재채광

05. 기타 비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부록 II〉

공종별 분류해설

1. 건축

① 주택

거주전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 주거 전용인 경우에는 주거용의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② 사무실, 점포, 축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유흥, 이·미용소, 빙송국, 시장.

③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작물(주택, 기숙사, 병원 제외)

발전소, 변전소,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④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기타 보호시설)

관공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기상대 등)

⑤ 기타 건축

철도, 부두, 공항 (기판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 제건물,
격납고). 단, 창고 제외.

교정시설 (형무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기타 (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 건물, 화장장)

2. 토목

① 치산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지방, 해안침식 대책, 개수공사.

② 농림수산

농업시설공사, 개척, 개간, 판개, 어항, 양식 시설.

③ 도로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④ 항만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금유설비, 저탄장, 저복장, 활주로.

⑤ 철도, 궤도

철도, 정거장, 지하철, 철도교량.

⑥ 상·하수도

취수, 도수, 정수, 배수 등 설비공사, 측구, 오물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도.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시설, 취수로.

⑨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⑩ 앰

앰시설, 취수설비 등.

⑪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중기설치.

⑫ 기타

핸델공사, 춘설, 색도.

3. 전문직별

연판난방 (연판, 냉난방공사, 환기)

도장 도배, 실내장식.

전기 (배전, 조명시설 : 옥내건축물)

석공미장 (석재 가공부착, 부록상기, 타일부착)

목공 (목공, 마루깔기)

지붕잇기, 합석공사.

구조강조립 (철풀조건설)

방수, 밤습, 내화.

기타 (유리, 굴정, 해체)

단,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 환기, 금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공사분류에 포함시킨다. 또, 부속건물(창고, 차고 등)이나 문파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분류한다.

〈부록Ⅲ〉

연습문제

1. 진위형

- 가. 수주액은 원도급공사 수주액만을 조사한다. ()
- 나. 발주자별 세분류의 분류가 까다로운 경우 무조건 「기타」 항목으로 처리한다. ()
- 다. 조사기간은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조사표는 15일까지 지방통계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20일까지 중앙에 팔자토록 한다. ()
- 라. 해외 수주는 ₩로 기입한다. ()
- 마. 대규모 공사액의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

2. 연결형

가. 발주자 분류

- a. 한국전력주식회사 ① 정부
b. 조선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c. 협립우산 ③ 국영기업체
d. 신촌맨션아파트주식회사 ④ 기타 공공단체
e. 프랑스대사관 ⑤ 음식료품

2. 대한어망주식회사

3. 경인에너지

4. 대한통운

5. 서울대학교

6. 중앙대학교

7. 서울시립농과대학

8. 쟁포간장

9. 대익준·농업협동조합

10. 부산 주철주식회사

11. 김 철 수

12. 강원단자

⑥ 섬유류

⑦ 화학식유

⑧ 철강

⑨ 기계

⑩ 기타 제조업

⑪ 운수 보관

⑫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⑬ 부동산

⑭ 광업

⑮ 기타 비제조업

⑯ 주한 외국기관

나. 농주자 분류

a. 삼양타이어

b. 오리엔트시제

c. 성창합판

d. 충남방직

e. 진로주조

f. 부산파이프

① 음식료품

② 섬유

③ 화학식유

④ 철강

⑤ 기계

⑥ 기타 제조업

다. 말주자 분류

- | | |
|-------------|-------------------|
| a. 호남정유 | ① 정부 |
| b. 대한석유공사 | ② 지방자치 단체 |
| c. 전국경제인연합회 | ③ 국영기업체 |
| d. 리 라국민학교 | ④ 기타 공공 단체 |
| e. 억 수국민학교 | ⑤ 운송보관 |
| f. 백마부대 | ⑥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
| g. 대한항공 | ⑦ 부동산 |
| h. 삼익주택 | ⑧ 화학석유 |
| i. 대한적십자사 | ⑨ 기타 비제조 |
| | ⑩ 주한외국기관 |

라. 공종 분류

- | | |
|------------|------------------|
| a. TBC방송국 | ① 치산치수 |
| b. 시립박물관 | ② 농림수산 |
| c. 시영아파트 | ③ 도로교량 |
| d. 대한통운창고 | ④ 항만공항 |
| e. 사방공사 | ⑤ 철도궤도 |
| f. 낙동강철교 | ⑥ 상·하수도 |
| g. 서부위생처리장 |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
| h. 준설 | ⑧ 토지조성, 공원, 경기장 |

1. 살수시설
- J. 당인리 화력발전소
 - K. 어린이대공원
 - L. 인천항도크
 - M. 미역 양식장
 - N. 대구, 마산고속도로
 - O. 인천항도크
 - P. 안동댐
 - Q. 물국사 재건공사
- ⑨ 렘
- ⑩ 기타 토목
- ⑪ 주택
- ⑫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 ⑬ 공장, 창고
- ⑭ 학교, 병원, 펍공서 청사
- ⑮ 기타 건축
- ⑯ 전문직별 공사

마. 공종 분류

- a. 제일이발소
 - b. 농협창고
 - c. 채육판
 - d. 기숙사
 - e. 미술관
- ① 주택
- ②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 ③ 공장창고
- ④ 학교병원, 펍공서 청사
- ⑤ 기타 건축

3. 기입형

△ 건설주식회사의 '76년 7월중의 건설활동은 아래와 같다.

8월조사시 본 회사의 7월분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아라 (사업체 번호는 11-991).

- 가. A 건설회사의 산하기관인 B 앤 천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15층짜리 건물을 13억원을 들여 직영으로 짓기로 계획을 확정 하다(예상공기는 '76년 7월부터 '77년 6월임).
- 나. 철도청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서울역 경거장을 발주하여 A 건설회사에서 2억 5천만원에 낙찰, 계약을 체결하다(공사기간은 '76.8월부터 '77.8월까지임)
- 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울산 앞바다에 금유설비공사를 A 건설회사에 1억원으로 발주하다(공기는 '76.9부터 1년간).
- 라. A 건설회사는 한양대 학교 부속 병원 건물을 '76.10월부터 5개월 간 11억원으로 짓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 마. 한국방송공사 제2스튜디오 건설을 위해 A 건설회사가 1천 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다만 소요 원자재 시멘트 50,000 포대(1포대당 300원) 철근 100 t(1톤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다(공기는 '76.8부터 6개월간임).
- 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조계사에 명난방 장치를 위해 A 건설회사에 5백만원에 발주하다(공기는 '76.7월부터 2개월간임).
- 사. 농협중앙회는 서울농협을 건설하기로 하고 A 건설회사에 3억원에 발주하다(공기는 '76.8월부터 '77.8월까지).
- 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경지공사를 A 건설회사가 3천만원에 도급 받다(공기는 '76.9월부터 3개월간).
- 자. 김씨는 점포임대 업을 위해 A 건설회사에 2천 5백만원에 5층

건물을 짓기로 밝혔다(5월 10일)。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 인건비 상승으로 A건설회사는 계약액 범

경을 요구하여 7월 20일에 3천만원으로 수정계약체결을 하였다.

차. 리라국민학교는 동교내 기숙사가 오래되어 동기숙사 해체공사를

의뢰코자 공개경쟁 입찰에 불였던바 A건설회사에 2천만원에 낙찰
되었다.

카. '76.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공사 입찰에 응찰한 결과

1억불에 낙찰되어 '76.10월부터 착공하여 78년 4월에 완공키로

7월에 계약을 체결하다(76년 7월 말일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

은 1달 484원임).

타. A건설회사는 국내 XX비행장 설치공사를 '76.8월부터 '76년

12월까지 15억원에 완공키로 하고 주한 국동 유엔군사령부와 계

약을 체결하다.

〈부록IV〉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 양식

1. 친위형

가. (x) 나. (x) 다. (○) 라. (x) 마. (○)

2. 연결형

가. a - ③	b - ⑨	c - ⑩	d - ⑬
e - ⑯	f - ⑥	g - ⑦	h - ⑪
i - ①	j - ⑫	k - ②	l - ⑤
m - ④	n - ⑧	o - ⑯	p - ⑭
나. a - ③	b - ⑤	c - ⑥	d - ⑬
e - ①	f - ④		
다. a - ⑧	b - ③	c - ⑨	d - ⑬
e - ②	f - ①	g - ⑤	h - ⑨
i - ④			
라. a - ⑫	b - ⑭	c - ⑪	d - ⑬
e - ①	f - ⑤	g - ⑥	h - ⑩
i - ⑯	j - ⑦	k - ⑧	l - ④
m - ②	n - ③	o - ④	p - ⑨

q - ⑯

a - ②

b - ③

c - ⑤

d - ①

e - ④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표

(1976년 7월분)

제출기한: 매월 15일

사업체 번호

11-99

I. 수주총액 (외부계약액+직영공사액)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총 수 주 액 발주자별	1. 전 축						2. 후 축						3. 전 문 직 업			4. 합 계					
	① 주.역	② 사무실, 경.포, 공장, 학교, 병원	③ 관공서, 학교, 병원	④ 기타 건축	⑤ 소계 치수	⑥ 소계 금액	① 산수	② 농림산	③ 도량	④ 항공	⑤ 암설	⑥ 도상수	⑦ 하도	⑧ 발전, 증진	⑨ 토지조성, 물류, 경기장	⑩ 경기장	⑪ 기계설치	⑫ 기기 도입	⑬ 소계 금액	⑭ 전수 금액	⑮ 합계 (1+2+3)
정부 01					17,260,000	17,260,000													130,000	130,000	
1. 국내공공부문 02																					
국영기업체 03	37,230,000					37,230,000													100,000	100,000	100,000
기타공공단체 04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계 09	38,230,000					38,230,000												2,000	2,000	2,000	
2. 국내민간부문 11	음식료품																				
12	점유류																				
13	화학석유																				
14	철강업																				
15	기계류																				
16	기타제조업																				
77	소계																				
21	운수보관																				
22	상업·서비스 금융·보험					21,100,000	21,100,000												105,000	105,000	
23	부동산	1,000,000	4,000				2,100,000												2,100,000	2,100,000	
24	광업																				
25	기타비제조업																				
88	소계	1,000,000	6,000			1,000,000	3,465,000											6,000	10,465,000		
99	계	1,000,000	6,000			1,000,000	3,465,000											6,000	10,465,000		
3. 국내외국기관 00																			1,000	1,000	
4. 국내합계(1+2+3) 99		38,230,000	1,000,000			38,230,000	3,465,000											1,000	1,000	1,000	
5. 해외수주 00																		145,000	145,000		
6. 총계(4+5) 99							1,000,000	26,000	6,193,000									145,000	145,000	147,188,000	

* 부호(+)와 부호(-)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낸업통계(74-8176)으로 문의하십시오.

(부록에는 가격지침이 있으나)

II.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 (직영공사제외)

* 모든 공사 내역을 기입할 것

III. 직영공사 (계획 또는 착공) 내역

IV. 비 고 (부기의 차수는 그림에 표기한 것과 같은 차수로 표기함)
부기의 차수는 그림에 표기한 것과 같은 차수로 표기함
부기의 차수는 그림에 표기한 것과 같은 차수로 표기함

기업 시 주의사항

1.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2. 본 조사의 수주액에는 ①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 ② 발주자금 원자재지급 계획액 (해외공사 수주액 조사시에는 제외, 계약당시 실가로 환산) 및 ③ 조사대상 건설업체, 모기업 또는 산하기업의 적정공사액도 포함한다.
 3. 모든 건설공사 수주 내역은 조사표 후면의 Ⅰ. 또는 Ⅲ.에 공사별로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 전면의 1. 수주액의 합계금은 조사표 후면의 Ⅱ. 및 Ⅲ.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4. 적정공사는 계획액은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시는 확공액으로 한다.
 5.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하도급 받은 경우 일자라도 외국 건설업체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6. 해외수주액은 계약당시의 환율(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치로 기입한다.
 7.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일의 증감액만을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 세분류 한에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 기호를 감액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문 앞에 표시하고 그 내역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8. 단 한건의 수주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만일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문을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시 포착 조사 기입하고 그 내역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9.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10. Ⅰ. 항에서 해외공사인 경우 발주자란에 발주국가명을 기입한다.
 11. Ⅲ. 항의 발주자명은 방제회사의 건설공사를 제작에 의하지 않고 착공할 때의 질수도 외자명을 기입한다.

사업자명 :	조사원성명 :
소속 : <u>국립현대미술관</u>	①
성명 : 22 × × ②	기호원성명 :
전화번호 : 776-0000	③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수주통계조사지침

197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목 차 —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연혁	3
다. 조사 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4
라. 조사범위	4
마. 조사대상처	4
바. 조사항목 (사항)	5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5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5
나. 사업체 번호	6
다. 수주액	6
3. 조사원 유의사항	11
가. 면 접	11
나. 실 사	12
다. 유고사업체 처리	13
라. 검 토	15
마. 제 출	16

부록 I.	발주자별 분류 해설	17
부록 II.	공종별 분류 해설	21
부록 III.	연습문제	25
부록 IV.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 양식	31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건설업 수주조사는 건설부장관 면허업체 중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서로 170개 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별·발주자별로 조사 집계함으로써 건설 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표 결과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 경영 관리 및 건설행정 등에 관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공여할 수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예고지표 구성체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 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 발주의 계약 수주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 경기 선행 지표가 된다.

나.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 26일 지정통계 제29호로 지정고시되었으며 1976년 7월분 조사부터 매월 「건설업 수주동향」속보로서 공표하고 있다.

다. 조사 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 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로서, 조사원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주액조사를 완료하여, 지도원에게 매월 17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하고 지도원은 매월 20일까지 당원에 조사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상주 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계식 방법을 병용한다.

라.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외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단 「하도급 공사중 국내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나, 해외공사에 있어서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마. 조사대상처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으로 170개 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취소·폐업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통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바. 조사항목

- (1) 지정된 대상업체의 발주자 및 공종별 월중 수주액
- (2) 국내외 대규모 공사 수주액 (1천만원 이상)
- (3) 적영공사 계획액
- (4)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 계획액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가능한 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항목들의 정의와 기입요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므로 다음 유의사항과 기입요령, 항목해설을 숙지한 후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는 조사완료후 분류, 심사, 집계 등을 거쳐 영구 보존되므로 다음 사항에 각별 유의하여 기입한다.

- (1)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차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를 쓰되 4와 6, 0과 6, 3과 5, 7과 9, 4와 9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3) 금액의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미만은 사사오일하여 기입한다.
- (4) 오기된 것을 정정코자 할 때는 청색 페으로 오기된 곳에 두

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5)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적요
탄에 상세히 기입한다.
- (6)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기입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공종별 세분
류상의 착오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세분류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
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발주자 및 공
종별 세분류 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 (7)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나. 사업체 번호

사업체 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다. 수주액

- (1) 본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서 월중 수주액을 공
종별 및 발주자별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 (2) 수주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 (3)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
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에는 공사계약액뿐만 아니라
발주자급 원자재 자급계획액과 직영공사 계획액도 포함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계약액외에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별도로 지급 키로 할 경우에, 지급 키로

한 원자재를 계약당시 실가로 환산하여 그 환산치를 반드시 계약액에 합산, 조사표 전면 「공종 및 발주자별 수주액」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자체를 위한 직영공사 계획액 또는 도기업이나 산하기업을 위한 직영공사 계획액도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과 포함하여 조사표 전면 수주액란에 공종 및 발주자별로 분류 기입하여야 한다.

(4)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액은 수주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외수주에 있어서 외국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계약액은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수주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경우일지라도 건설업체가 아닌 상사, 회사 등이 원도급받은 것을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하도급(재도급, 하청)받은 경우에는 수주액에 포함된다.

※ [주] 발주자 지급 원제료비와 직영공사액은 계약액에서 빼지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수주액조사에서 누락할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특히 조달청이 지방 자치단체나 국영기업체를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잡아야 한다.

(6) 수주 기준일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처리일이 수주기준일이 된다.

즉,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 작성중 또는 계약 체결전의 일부 착

공 등은 수주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영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직영공사 계획이 확정된 때가 수주 기준일이 되고 수주액은 직영공사 확정시의 공사계획액이 수주액이 된다.

(7) 계약변경시 기입요령

계약변경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해당 월의 조사시에 증감액된 만큼만을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 앞에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기호를 붙여 기입하고 동 내역을 척요란에 기재한다.

(8) 해외수주

해외수주는 계약당시의 환율(한국은행 집중 기준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치를 기입한다.

(9) 대규모 공사 수주내역

1전당 수주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기입하되, 공사명, 발주자명, 수주액을 정확히 기입한다.

특히 계약액이 1천만원이 안되어 라도 발주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자재 금액을 합산했을 때 1천만원이 넘으면 본란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공종 세분류 및 발주자 세분류란에는 부록 1 및 부록 2의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해설을 참고하여 세분류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가를 확인하여 기입하며 발주자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생 산품명을, 발주가 비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요 업무명을 마지막 란에 기입한다.

(10) 직영공사 계획액

건설업체의 자가건설이나 산하기업 모 기업을 위한 직영공사도 수주액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다.

따라서 직영공사 계획액도 조사표 전면 • 공종 및 발주자별 수주액 • 란에 포함시켜 기입하고 특히 직영공사 계획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 대규모 공사 수주액 • 란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11) 발주자금 원자재 지급 계획액

발주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자재 지급계획액을 수주액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다. 다만 해외 수주에 있어서 발주자(외국)가 지급키로 한 원자재 금액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12)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 예외로 기입하고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국군부대인 경우

① 조사표 전면의 • 수주액 • 항목란은 조사표 상에 세분류한 발주자 및 공종명 란에 수주액을 기입한다.

② 조사표 이면의 • 국내외 대규모공사 수주액 • 및 • 발주자금 원자재 지급계획액 • 항목에는

1. 발주자명을 군부대명 대신 «정부»라 기입한다.

2. 공사명란은 기입않도록 하며 그대로 공백으로 둔다.

3. 공종세분류란은 조사표 전면 «수주액» 항목란에 세분류한
발주자명과 공종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기입예 : (발주자명) (공종명)

1 2 3 4 부대 (X) 비행장설치공사 (X)

정부 (O) 항만·항공 (O)

(나) 발주자가 주한 외국인인 경우

① 조사표 전면의 «수주액» 항목란은 공종이 건축인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세분류한 발주자 및 공종별로 분류 기입하여야
하나 공종이 토목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 토목»으로 분류
하여 기입한다.

② 조사표 이번의 «국내외 대규모공사 수주액» 및 «발주자
금 원자재 지급계획액» 항목에는

1. 발주자명을 주한 외국인 (유엔군 부대) 명 대신 «국내
외국기관»이라 기입한다.

2. 공사명란과 공사 세분류란은 발주자가 국군부대일 경우의
기입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기입예 : (발주자명) (공종명)

국동유엔군 사령부 (X) 오산비행장진입로포장공사 (X)

국내외국기관 (O) 기타토목 (O)

3. 조사원 유의사항

가. 면 접

- (1) 조사원은 대상업체를 방문, 응답자와 면접할 때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후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2) 조사표를 제출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성의있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기재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 염수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안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측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기일과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할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고,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4) 직접 면접에 의해 조사표를 기재할 경우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관계 등을 미리 감안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조사표 기록부를 휴대 방문하였을 시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 (5) 참고로 통계법 제7조, 8조, 9조는 다음과 같다.

통계법 제7조(설지조사)

-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통계외 조사확인

을 위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로 제출의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8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9조 (통계목적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실 사

(1)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물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 이전까지는 조사표 기입을 완
료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
사표 작성시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
여 조사표에 기재 해야 한다.

(3)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발주자 및 공종명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하

며 만일 발주자 및 공종이 잘못 분류되었거나 애매
할 때에는 부록 I, II를 참조하고 사업체에 세밀하게
분의하여 구분도록 하고 그래도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발
주자 및 공종을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기입도록 한다.

둘째,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계획액이 조사표 전면의 수주액 항목
과 조사표 이면의 국내외 대규모 공사 수주액 항목에도
(계약액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일 때) 포함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세째,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국군부대, 유엔군 등)에 관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 기입방법대로 기입되었는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조사기록부 기록시에도 방위와 관련된 발주
자에 관한 조사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기입방법대로 기입하
여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 불명, 이전, 전업과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응답불응 사업체

- (가) 1차적으로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과,부장을 방문 협조를 구한다.
- (나)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 지부에 즉 면 지원 요청토록 한다.
- (다) 건설협회 시·도 지부의 종용에도 불응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 예정자, 협회 종용일, 기타 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2)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대외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 등 내부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원은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폐사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 조사표 청탁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지도원은 조사원의 보고를 반음과 동시에 중앙에 그 사유를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사업체

담당한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체 판

할 시·도 전설협회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지방통계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이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의 순위상의 차순위업체를 새로이 대상처로 선정하여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므로 폐업을 확인한 즉시 보고되어야 추가로 대상처를 선정하여 당해 월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전 사업체

동일 조사구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해야 되고 동일 조사구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에게 조속 연락하여 해당 월에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

타지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속지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도원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된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라. 겸 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겸토하여 제출한다.

- (1) 조사기준 (년, 월분),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항목별 합계의 합리성 여부
- (3) 공종별 발주자별 세분류의 타당성 여부

(4) 기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

마. 제 출

- (1) 매월 15일까지는 조사표를 회수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접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부록 I〉

발주자별 분류해설

1. 국내 공공부문 발주

0 1. 정부

중앙 각원, 부, 차, 청, 입법부, 사법부, 중앙부처의 지방주재기관,
군부대, 국립학교, 교육위원회.

0 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도, 시군, 구, 교육위원회, 시군교육청,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비제조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 서비스업에
분류)

0 3. 국영기업체

정부 현업판서를 제외한 국영기업체로 각종 공사, 국책은행, 주
식회사 등

특수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공사 :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광업제련공사, 대한준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국제판광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해운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조선공사는 민영화되었으므로 민간제조업중 「기계」
로 분류한다).

주식회사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전력, 한국비료, 포항제철

(호남비료, 충주비료, 대한염업 등은 민영화되었으므로
여기서 제외).

기 타 : 토지금고, 은행감독원, 한국감정원.

04.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 조합(농협, 어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영
조물법인, 각종 공공연구소, 대한적십자사.

2. 국내민간발주

(1) 제조업

01. 음식료품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
물기름제조가공, 도정, 제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업, 얼음제조업, 조미료생산업

02. 의류제조

직물, 가방제조, 편직, 어망, 로푸, 방저, 계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제조, 자수업(Embroiderios), 뜯자리

03. 화학석유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플라스틱, 인조심유,
도료, 안료, 의약제품, 비누,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

04. 철강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철금속제련

05. 기계

금속제품, 철물제조, 농기구, 구조물, 장치틀, 철판, 양철판,
합금, 케이블, 철선, 나사, 도률, 기계제조, 장비제조, 전기통신,
기계기구,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과학계측기,
의료용기구, 시계, 안경, 전자제품

06. 기타제조

제제, 제지,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칠기, 사무용품, 고용품, 시멘트

(2) 비제조업

01. 운송, 보관

운수, 창고, 파이프 라인운송, 수상운송, 항만시설대여,
항공운수 보관업

0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비스

일반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부동산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어비스, 법무회계 서어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 건축설계사무소, 광고, 신문, 민영방송,

각종 협회, 홍신,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03. 부동산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04.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비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검토, 석면, 장석, 암석, 석재채취

05. 기타 비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부록 II〉

공종별 분류해설

1. 건축

① 주택

거주전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산업용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의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는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② 사무실, 점포, 국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욕탕, 이·미용소, 방송국, 시장.

③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건물 (주택, 기숙사, 병원 제외)

발전소, 변전소,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④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 (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후생시설 (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기타 보호시설)

관공청사 (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기상대 등)

⑤ 기타 건축

철도, 부두, 공항 (기관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 제건물, 격납고). 단, 창고 제외.

교정시설 (형무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기타 (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 전문, 화장장)

2. 토목

① 치산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지방, 해안침식 대책, 개수공사.

② 농림수산

농업시설공사, 개척, 개간, 관개, 어항, 양식 시설.

③ 도로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④ 항만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금유설비, 저탄장, 저북장, 활수로.

⑤ 철도, 궤도

철도, 정거장, 지하철, 철도교량.

⑥ 상·하수도

취수, 도수, 정수, 배수 등 설비공사, 측구, 오물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도.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시설, 휴수로.

⑧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⑨ 땅

댐시설, 휴수설비 등.

⑩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증기설치.

⑪ 기타

렌털공사, 준설, 색도.

3. 전문직별

연판난방 (연판, 난방, 환기, 냉방삼수)

도장 도배, 실내장식.

전기 (배전, 조명시설 : 옥내건축물)

석공미장 (석재가공부착, 부록쌓기, 타일부착)

목공 (목공, 마루깔기)

지붕잇기, 합석공사.

구조강조립 (철골조건설)

방수, 방습, 내화.

기타 (유리, 굴정, 해체)

단,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 환기, 금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공사분류에 포함시킨다.
또, 부속건물(창고, 차고 등)이나 물따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분류한다.

〈부록III〉

연습문제

1. 진위형

- 가. 수주액은 원도급공사 수주액만을 조사한다. ()
- 나. 발주자별 세분류의 분류가 까다로운 경우 무조건 «기타» 항목으로 처리한다. ()
- 다. 조사기간은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조사표는 15일까지 지방통계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20일까지 중앙에 필착토록 한다. ()
- 라. 해외 수주는 \$로 기입한다. ()
- 마. 대규모 공사액의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

2. 연결형

가. 발주자 분류

- a. 한국전력주식회사 ① 정부
b. 조선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c. 협동우산 ③ 국영기업체
d. 신촌엔션아파트주식회사 ④ 기타 공공단체
e. 프랑스대사관 ⑤ 음식료품

- | | |
|---------------|---------------------|
| o. 대한어망주식회사 | ⑥ 섬유류 |
| e. 경인에너지 | ⑦ 화학석유 |
| h. 대한통운 | ⑧ 철강 |
| i. 서울대학교 | ⑨ 기계 |
| j. 중앙대학교 | ⑩ 기타 제조업 |
| k. 서울시립농과대학 | ⑪ 운수 보관 |
| l. 셀포간장 | ⑫ 금융, 보험, 상업, 서어 비스 |
| m. 대덕군 농업협동조합 | ⑬ 부동산 |
| n. 부산 주철주식회사 | ⑭ 광업 |
| o. 김천수 | ⑮ 기타 비제조업 |
| p. 강원단좌 | ⑯ 주한 외국기관 |

나. 밭주자 분류

- | | |
|-----------|----------|
| a. 삼양타이어 | ① 음식료품 |
| b. 오리엔트시계 | ② 섬유 |
| c. 성창합판 | ③ 화학석유 |
| d. 충남방직 | ④ 철강 |
| e. 진로주조 | ⑤ 기계 |
| f. 부산파이프 | ⑥ 기타 제조업 |

다. 발주자 분류

- | | |
|-------------|-------------------|
| a. 호남정유 | ① 정부 |
| b. 대한석유공사 | ② 지방자치 단체 |
| c. 전국경제인연합회 | ③ 국영기업체 |
| d. 리라국민학교 | ④ 기타 공공단체 |
| e. 억수국민학교 | ⑤ 운송보관 |
| f. 백마부대 | ⑥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
| g. 대한항공 | ⑦ 부동산 |
| h. 삼익주택 | ⑧ 화학석유 |
| i. 대한적십자사 | ⑨ 기타 비제조 |
| | ⑩ 주한외국기관 |

라. 공종 분류

- | | |
|------------|------------------|
| a. TBC방송국 | ① 치산치수 |
| b. 시립박물관 | ② 농림수산 |
| c. 시영아파트 | ③ 도로교량 |
| d. 대한통운창고 | ④ 항만공항 |
| e. 사방공사 | ⑤ 철도궤도 |
| f. 낙동강철교 | ⑥ 상·하수도 |
| g. 서부위생처리장 |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
| h. 준설 | ⑧ 토지조성, 공원, 경기장 |

1. 살수시설

j. 당인리 화려발전소

k. 어린이대공원

l. 인천항도크

m. 미역양식장

n. 대구, 마산고속도로

o. 인천항도크

p. 안동댐

q. 불국사 재건공사

⑨ 범

⑩ 기타 토목

⑪ 주택

⑫ 사무실, 검포, 수박시설, 오락장

⑬ 공장, 창고

⑭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⑮ 기타 건축

⑯ 전문직별 공사

미. 공종 분류

a. 제일이발소

b. 농협창고

c. 체육관

d. 기숙사

e. 미술관

① 주택

② 사무실, 검포, 수박시설, 오락장

③ 공장창고

④ 학교병원, 관공서, 청사

⑤ 기타 건축

3. 기입형

1. 건설주식회사의 '76년 7월중의 건설활동은 아래와 같다.

2. 월조사시 본 회사의 7월분 건설업 수수께끼 조사표를 다음과 같이

보아라 (사업체, 번호는 11-99인).

- 가. A 건설회사의 산하기관인 B 맨션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15층짜리 건물을 13억원을 들여 직영으로 짓기로 계획을 확정 하다 (예상공기는 '76년 7월부터 '77년 6월임).
- 나. 철도청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서울역 정거장을 빌주하여 A 건설회사에서 2억 5천만원에 낙찰, 계약을 체결하다 (공사기간은 '76.8월부터 '77.8월까지임).
- 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울산 앞바다에 금유설비공사를 A 건설회사에 1억원으로 발주하다 (공기는 '76.9부터 1년간).
- 라. A 건설회사는 한양대 학교 부속 병원 건물을 '76.10월부터 5개월 간 11억원으로 짓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 마. 한국방송공사 제 2스튜디오 건설을 위해 A 건설회사가 1천 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다만 소요 원자재 시멘트 50,000 포대 (1포대당 300원) 철근 100 t (1톤당 100,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다 (공기는 '76.8부터 6개월간임).
- 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조계사에 냉난방 장치를 위해 A 건설회사에 5백만원에 발주하다 (공기는 '76.7월부터 2개월간임).
- 사. 동협중앙회는 서울동협을 건설하기로 하고 A 건설회사에 3억원에 발주하다 (공기는 '76.8월부터 '77.8월까지).
- 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정지공사를 A 건설회사가 3천만원에 도급 받다 (공기는 '76.9월부터 3개월간).
- 자. 김씨는 점포임대 업을 위해 A 건설회사에 2천 5백만원에 5층

건물을 짓기로 발주하였다(5월 10일).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 인건비 상승으로 A건설회사는 계약액 변경을 요구하여 7월 20일에 3천만원으로 수정계약체결을 하였다.

차. 리라국 민학교는 동교내 기숙사가 오래되어 동기숙사 해체공사를 의뢰코자 공개경쟁 입찰에 불었던바 A건설회사에 2천만원에 낙찰되다.

카. '76.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공사 입찰에 응찰한 결과 1억\$에 낙찰되어 '76.10월부터 착공하여 '78년 4월에 완공키로 7월에 계약을 체결하다(76년 7월 말일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은 1\$당 484원임).

타. A건설회사는 국내 ××비행장 설치공사를 '76.8월부터 '76년 12월까지 15억원에 완공키로 하고 주한 국동 유엔군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다.

〈부록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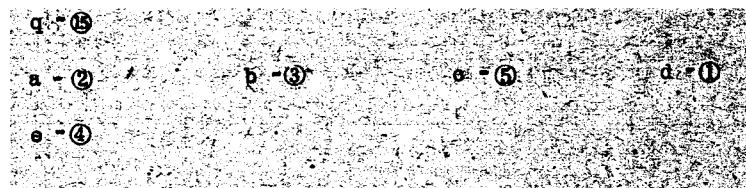
연습문제 정답 및 졸사표 양식

1. 진위형

가. (x) 나. (x) 다. (○) 라. (x) 마. (○)

2. 연결형

가.	a - ③	b - ⑨	c - ⑩	d - ⑬
	e - ⑯	f - ⑥	g - ⑦	h - ⑪
	i - ①	j - ⑫	k - ②	l - ⑤
	m - ④	n - ⑧	o - ⑯	p - ⑭
나.	a - ③	b - ⑤	c - ⑥	d - ②
	e - ①	f - ④		
다.	a - ⑥	b - ③	c - ⑨	d - ⑥
	e - ⑯	f - ①	g - ⑤	h - ⑨
	i - ④			
라.	a - ⑫	b - ⑭	c - ⑪	d - ⑬
	e - ①	f - ⑤	g - ⑥	h - ⑩
	i - ⑯	j - ⑦	k - ⑧	l - ④
	m - ②	n - ③	o - ④	p - ⑨



II. 국내외 대구도 공사 수주

IV. 대구주자금 일자리 창출 계획

※ 1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기입할 것.

(단위: 천원)

순번	공종세분류	공사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	예상시기	수주액	주생산품 (주업종)
①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	
②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10,000	우승
③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100,000	
④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1,000,000	사업체
⑤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30,000	
⑥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5,000	증가
⑦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2,000,000	
⑧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20,000	
⑨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1,400,000	
⑩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7월 ~ 8월	1,500,000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단위: 천원)

순번	공종세분류	공사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	원자재지급액
①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1,000
②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③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④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⑤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⑥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⑦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⑧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⑨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⑩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V. 비고
※ 기초를 제외한 대구 경로당에 대한 5종간 29가 인천비공동
제작업체(제작업체) 3개업체에 수령계약(500여개 품목)

기입사 구의사항

1. 금액은 천만단위로 기입한다.
2. 공중법 발주기능부본부는 특히 유의하여 기입요령서를 잘 읽고 기입한다.
3. 낙찰자가 기초와 기초는 낙찰자는 해당 당시 시가도 확정하여 수주액에 포함시키고 건설업체의 자가 건설이나 모기업으로 낙찰하는 경우는 자체공사에도 수주액에 포함된다.
4. 하도급자는 수주액은 원자재으로서 주체공사에서 제이한다. 다만 국내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건설업체가 아닌 상사의 수주액은 주체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회사 등인 경우의 하도급 수주액은 수주액에 포함된다.
5. 제작수주액은 제작업체의 부수를 적용하여 원회원수치를 기입한다.
6. 계약여부는 낙찰한 경우에는 계약발행일의 계약여부를 기입한다. 즉 종전에는 종례문 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문만은 계약여부는 계약문 일에 기록을 하고 계약문일을 기입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다.
7. 국내공사에서 계약업체가 다른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하는 경우 및 그업체가 공동가격을 대체 발주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제작업체)를 확인하여 원도급자 수주액으로 산정된다.
8. 후면의 II, III, IV항에 표기된 수주액은 원수주는 기본의 수주액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9. 후면의 II항에서 낙찰한 경우는 계약여부를 기록하여 원수주기록을 기입한다.
10. 후면의 II항에서 계약여부는 계약여부로 표기하여 원수주기록을 기입한다.
11. 후면의 II항에서 낙찰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의 주생산품명을 기입하고 이체로 납제하는 경우에는 이체가 수령하는 주도 입수처를 기입한다.

III. 적영공사계획

(단위: 천원)

순번	공종세분류	공사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	적영공사계획액
①	기초	기초	국내외공사	국내외공사	1,200,000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생자	제작업체	주차제지급액
제작업체	제작업체	①
제작업체	제작업체	②
제작업체	제작업체	③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요령서

(1976)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목 차 —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 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3
다. 조사범위	4
라. 조사대상처	4
마. 조사항목 (사항)	4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5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5
나. 사업체 번호	6
다. 수주액	6
3. 조사원 유의사항	9
가. 면접	9
나. 실사	10
다. 유고사업체 처리	10
라. 겸임	12
마. 제출	13
부록 1. 발주자별 분류 해설	15
부록 2. 공종별 분류 해설	18
부록 3. 연습문제	21
부록 4.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 양식	26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본 건설업 수주조사는 전설부장관 면허업체 중 전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서로 17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별 발주자별로 조사 집계함으로써 전설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표 결과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전설업의 생산활동, 경영관리 및 전설행정 등에 관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공여할 수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예고지표 구성계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 전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민간전설공사 수주액은 민간발주의 기계 수주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 경기 선행지표가 된다.

나. 조사연혁 :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시범조사를 거쳐 1976년 7월 1일 지정통계 제29호로 지정되어 되었으며 1976년 7월 1일 조사부록 매뉴 「건설업 수주통계」 속 보례 등으로

조사 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로서, ~~내선업체에 차는~~ 조사원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주액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원을~~ 지도원에게 매월 17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하고 지도원은 매월 20일까지 당원에 조사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상주 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계식 방법을 병용한다.

다. 조사 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의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칙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하도급 공사 중 국내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나, 해외공사에 있어서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라. 조사 대상처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 대규모 순으로 170개 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 취소 폐업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 (통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마. 조사 항목

- (①) 지정된 대상업체의 발주자 및 공종별 월중 수주액.
- (②) 국내의 대규모 공사 수주액(1천만원 이상).
- (③) 칙영공사 계획액.
- (④)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 계획액

2. 조사항목 해설과 기입요령

가능한 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항목들의 정의와 기입요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므로 다음 유의사항과 기입요령, 항목해설을 숙지한 후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는 조사 완료 후 분류, 심사, 집계 등을 거쳐 영구 보존되므로 다음 사항에 각별 유의하여 기입한다.

- ①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 ②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4와 6, 0과 6, 3과 5, 7과 9, 4와 9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③ 금액의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만은 자자오입하여 기입한다.
- ④ 오기된 것을 정정교차 할 때는 청색 펜으로 오기된 곳에 2줄 횡선을 그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⑤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⑥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기입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공동별 세분류상의 차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세분류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발주자 및 공종별 세분을 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⑦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염수해야 한다.

나. 사업체 번호

사업체 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다. 수주액

(1) 본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서 월중 수주액을 공종별 및 발주자별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2) 수주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3) 수주액에는 조사 기간중 발주자와 계약한 제약액 (발주자가 원자재를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동 지급계획 원자재의 계약 당시 시가 환산치를 합산한 금액)이나 조사 대상의 자가건설 또는 모 기업이나 산하기업을 위한 직영공사 계획액을 모두 포함한다.

(4) 하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다만 해외 수주에 있어서, 외국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 및 국내 수주에 있어서 건설업체 아닌 상사, 회사 등이 원도급 받은 것을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수주액에 포함된다.

(5) 특히 조달청이 지방 자치단체나 국영기업체를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 (실수요처)를 발주자로 잡아야 한다.

⑥ 수주 기준일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 처리일이 수주 기준일이 된다.

즉,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 작성중 또는 계약 체결전의 일부
착공 등은 수주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영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직영공사 계회액이 확정된 때가
수주 기준일이 되고 수주액은 직영공사 확정시의 공사
계회액이 수주액이 된다.

⑦ 계약변경시 기입 요령

계약변경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해
당월의 조사시에 증감해된 만큼만을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 앞에 +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
기호를 붙여 기입하고 동 내역을 첨요란에 기재한다.

⑧ 해외수주

해외수주는 계약당시의 환율 (한국은행 접수 기준율)을 적용
한 원화 환산치를 기입한다.

⑨ 대규모 공사 수주내역

1 건당 수주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기입하되. 공사명, 발
주자명, 수주액을 정확히 기입한다. 특히 계약액이 1천만원
도 넘는 경우 기입하는 공사명과 계약액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공종 세분류 및 발주자 세분류란에는 부록 1 및 부록 2
의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해설을 참고하여 세분류 항목
의 어느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기입하며 발주자가 제조업

체인 경우에는 주 생산품명을, 발주가 비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요 업무명을 마지막 항에 기입한다.

⑩ 직영공사 계획액

전선업체의 차가운선이나 산하기업·도 기업을 위한 직영공사도 수주액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다. 특히 직영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아울러 대구·경북·충청·전남·전북으로 하여금 한다.

⑪ 발주자급 원자재 자급 계획액

발주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자재 자급계획액을 수주액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다.

(12) ~~발주자~~ ~~방법~~과 관련된 발주자 일정에는 다음 바람이 기입하여 놓라.

(13) 발주자가 국토주택인정부에는

(14) 조사를 전면의 "수주액" 항목과는 조사내용에 ~~수주액~~ ~~수주액~~ 및 공급명 ~~수주액~~ 기입한다.

(15) 조사를 하면의 대규모 "용사내역" 및 "수주자금 원자재 계획액" 항목에 대신

(16) ~~보증자~~ ~~보증~~ 조부대명 ~~기입~~ ~~기입~~ ~~기입~~ "장부"로 기입한다.

(17) 공사명은 기입해서는 유통망과 그대로 공개으로 놓는다.

(18) 공중세포류 ~~로~~ ~~로~~ 전면화 ~~로~~ ~~로~~ 기입한다.

보통한 발주자명과 공급명과 흙계율이 기입된다.

기입 예: 1234부대 X ~~제작~~ ~~제작~~ X

발주자가 3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0

3. 조사원 유의사항

가. 면접

- (1) 조사원은 대상업체를 방문, 응답자와 면담할 때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후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2) 조사표를 제출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성의있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기재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 염수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안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기일과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한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고,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4)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기재할 경우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관계 등을 미리 감안해야 하며 그려가 위하여 조사표 기록부를 휴대 방문하였을 시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 (5) 참고로 통계법 제7조, 8조, 9조는 다음과 같다.

통계법 제7조(실지조사)

-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작성통계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9-

② 공사되었던 것을 기록할 때에는

③ 공증서로 된 것을 기록할 때에는

내역
한부에는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로 제출의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9 조 (통계목적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설 사

(1)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획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 이전까지는 조사표 기입을 완료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표 작성시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과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 중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응답 불응 사업체

- (가) 1차적으로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과,부장을 방문 협조를 구한다.
- (나)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전설협회 시·도 지부에 측면 지원 요청토록 한다.
- (다) 전설협회 시·도 지부의 종용에도 불응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 예정자, 협회 종공일, 기타 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2)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내외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 등 내부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원은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 조사표 척 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지도원은 조사원의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중앙에 그 사유를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사업체

담당한 사업체 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체

관할 시·도전설협회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지방통계
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이 발생한 경우 도급한도액 순위상의 차순위
업체를 새로이 대상처로 선정하여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
므로 폐업을 확인한 즉시 보고되어야 추가로 대상처를 선정
하여 당해 월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전 사업체

동일 조사구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해야 되
고 동일 조사구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
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에게 조속 연락하여 해당 월에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

타지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속지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
도원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된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라. 검 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한다.

- ① 조사기준(년, 월분),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② 항목별 합계의 합리성 여부
- ③ 공종별 발주자별 세분류의 타당성 여부
- ④ 기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

마. 제 출

- ① 매월 15일까지는 조사표를 회수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도원은 접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부록 1〉

발주자별 분류해설

1. 국내 공공부문 발주

01. 정부

중앙 각원, 부,처,청, 입법부, 사법부, 중앙부처의 지방주재 기관, 군부대, 국립학교, 판권위원회.

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도, 시군, 구, 교육위원회, 시군교육청,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비제조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 서비스에 분류)

03. 국영기업체

정부현업 관서를 제외한 국영기업체로 각종 공사 국채 은행 주식회사 등

특수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공사 :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광업제련공사, 대한준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국제관광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해운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조선공사는 민영화 되었으므로 민간제조업 중 "기계"로 분류한다.)

주식회사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그린리, 한국비료, 포항제철
(호남비료, 충주비료, 대한염업 등은 민영화 되었으므로 여기서 제외).

* 기 타 : 토지감고, 은행감독원, 한국감정원,

04.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 조합(농협, 어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영조률법인, 각종 공공연구소, 대한적십자사.

2. 국내 민간 발주

(1) 제조업

01. 음식료품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물기름제조가공, 도정, 제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업, 열음제조업, 조미료생산업

02. 의류제조

직물, 가방제조, 편직, 어망, 로푸, 방적, 계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제조, 자수업(Embroiderios), 뜯자리

03. 화학석유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플라스틱, 인조섬유,
도료, 안료, 의약제품, 비누,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

04. 철강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철금속제련

05. 기계

금속제품, 철물제조, 농기구, 구조물, 장치를, 철판, 양철판, 합금, 케이블, 철선, 나사, 도굴, 기계제조, 장비제조, 전기통신, 기계기구,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과학제작기, 의료용기구, 시계, 안경, 전자제품

06. 기타제조

제제, 제지,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규금속, 우산, 철기, 사무용품, 고공품, 시멘트

(2) 비제조업

01. 운송, 보관

운수, 창고, 퍼시픽라인 운송, 수상운송, 항만시설대여, 항공운수 보관업

0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비스

일반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부동산 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비스, 법무회계서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 건축설계사무소, 광고, 신문, 민영방송, 각종 협회, 흥신,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03. 부동산

대질포, 대사무실,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04.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비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점토, 석면, 장석, 암석, 석재채취

05. 기타 비제조업

농어업, 전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부록 II〉

공종별 분류해설

一、忍耐

① 주 힘

거주전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 주거용 혼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의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②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청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유흥장, 이·미용소, 방송국, 시장.

③ 공장, 창고

공장구내 재건물(주택, 기숙사, 병원 제외)

발전소, 변전소,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④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기타 보호시설)

관공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기상대 등)

⑤ 기타 전 축

철도, 부두, 공항(기관차 차고, 정거장 체전물, 부두 체전물 격
납고), 단, 창고 제외.

교정시설(형무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기 타(사찰, 교회, 체육관, 박물관, 회관, 화장장)

2. 토목

① 치산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지방, 해안침식 대책, 개수공사,

② 농림수산

농업시설공사, 개척, 개간, 관개, 어항, 양식 시설.

③ 도로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④ 항만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급유설비, 저탄장, 저목장, 활주로.

⑤ 철도, 궤도

철도, 정거장, 지하철, 철도교량.

⑥ 상·하수도

취수, 도수, 정수, 배수 등 설비공사, 측구, 오물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도.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시설, 취수로.

⑧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백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⑨ 냄.

냄시설, 취수설비 등.

⑩ 기계설치

각종기계설치, 기중기설치.

⑪ 기타:

렌탈공사, 춘설, 색도.

3. 전문직별

연판난방 (연판, 난방, 환기, 냉방삼수)

도장 도배, 실내 장식.

전기 (배전, 조명시설: 옥내건축물)

석공미장 (석재가공부착, 부록쌓기, 타일부착)

목공 (목공, 마루깔기)

지붕잇기, 합석공사.

구조강조립 (철골조건설)

방수, 방습, 내화.

기타 (유리, 쿨정, 해체)

단,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 환기, 급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공사분류에 포함시킨다.

또, 부속건물 (창고, 차고동)이나 문따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분류한다.

<부록 3>

연습문제

1. 진위형

- 가. 수주액은 원 도급공사 수주액단을 조사한다. ()
- 나. 발주자별 세분류의 분류가 까다로운 경우 무조건 "기타" 항목으로 처리한다. ()
- 다. 조사기간은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조사표는 15일까지 지방 통계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20일까지 중앙에 필자로 한다. ()
- 라. 해외수주는 \$로 기입한다. ()
- 마. 대규모 공사액의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

2. 연결형

가. 발주자 분류

- | | |
|----------------|-----------|
| a. 한국전력주식회사 | ① 정부 |
| b. 조선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 |
| c. 협립우산 | ③ 국영기업체 |
| d. 신촌맨션아파트주식회사 | ④ 기타 공공단체 |
| e. 프랑스대사관 | ⑤ 음식료품 |
| f. 대한어망주식회사 | ⑥ 섬유류 |
| g. 경인에너지 | ⑦ 화학석유 |

- | | |
|---------------|-------------------|
| h. 대한통운 | ⑧ 철강 |
| i. 서울대학교 | ⑨ 기계 |
| j. 중앙대 학교 | ⑩ 기타 제조업 |
| k. 서울시립농과대학 | ⑪ 운수 보관 |
| l. 샘표간장 | ⑫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
| m. 대덕군 농업협동조합 | ⑬ 부동산 |
| n. 부산 주철주식회사 | ⑭ 광업 |
| o. 김철수 | ⑮ 기타 비제조업 |
| p. 강원탄좌 | ⑯ 주한 외국기관 |

나. 발주자 분류

- | | |
|-----------|----------|
| a. 삼양타이어 | ① 음식료품 |
| b. 오리엔트시계 | ② 섬유 |
| c. 성창합판 | ③ 화학석유 |
| d. 충남방적 | ④ 철강 |
| e. 진로주조 | ⑤ 기계 |
| f. 부산파이프 | ⑥ 기타 제조업 |

다. 발주자 분류

- | | |
|-------------|-----------|
| a. 호남정유 | ① 정부 |
| b. 대한석유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 |
| c. 전국경제인연합회 | ③ 국영기업체 |
| d. 리라국민학교 | ④ 기타 공공단체 |

- | | |
|-----------|-------------------|
| e. 덕수국민학교 | ⑤ 운송보관 |
| f. 백마부대 | ⑥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 |
| g. 대한항공 | ⑦ 부동산 |
| h. 삼익주택 | ⑧ 화학석유 |
| i. 대한적십자사 | ⑨ 기타 비제조 |
| | ⑩ 주한외국기관 |

라. 공종 분류

- | | |
|---------------|----------------------|
| a. TBC 방송국 | ① 치산치수 |
| b. 시립박물관 | ② 농림수산 |
| c. 시영아파트 | ③ 도로교량 |
| d. 대한통운창고 | ④ 항만공항 |
| e. 사방공사 | ⑤ 철도궤도 |
| f. 낙동강철교 | ⑥ 상·하수도 |
| g. 서부위생처리장 | ⑦ 발전, 송전, 변전, 배전 |
| h. 준설 | ⑧ 토지조성, 공원, 경기장 |
| i. 살수시설 | ⑨ 댐 |
| j. 당인리 화력발전소 | ⑩ 기타 토폭 |
| k. 어린이대공원 | ⑪ 주택 |
| l. 인천항도크 | ⑫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
| m. 미역양식장 | ⑬ 공장, 창고 |
| n. 내구, 마산고속도로 | ⑭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
| o. 인천항도크 | ⑮ 기타 건축 |

q. 불국사 재건공사

마. 공종 분류

a. 계일이 발소

① 주택

b. 농협 창고

②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c. 체육관

③ 공장 창고

d. 기숙사

④ 학교병원, 관공서 청사

e. 미술관

⑤ 기타 건축

• 기입형

A 건설주식회사의 '76년 7월중의 전설활동은 아래와 같다.

8월조사시 본 회사의 7월분 전설업 수주통계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아라(사업체 번호는 11-99임).

가. A 건설회사의 산하기관인 B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15층짜리 건물을 13억원을 들여 직영으로 짓기로 계획을 확정하다(예상공기는 '76년 7월부터 '77년 6월임).

나. 철도청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서울역 경거장을 발주하여 A건설회사에서 2억 5천만원에 낙찰 계약을 체결하다(공사기간은 '76.8월부터 '77.8월까지임).

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울산 앞바다에 금유설비공사를 A건설회사에 1억원으로 발주하다(공기는 '76.9부터 1년간).

라. A건설회사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건물을 '76.10월부터 5

개월간 11억원으로 짓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마. 한국방송공사, 제2 스튜디오 건설을 위해 A건설회사가 1천 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다만 소요 원자재 시멘트 50,000포대 (1포대당 300원) 철근 100t (1톤당 100,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다 (공기는 '76.8부터 6개월간임).

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조계사에 냉난방 장치를 위해 A건설 회사에 5백만원에 발주하다 (공기는 '76.7월부터 2개월간임).

사. 농협중앙회는 서울농협을 건설하기로 하고 A건설회사에 3억 원에 발주하다 (공기는 '76.8월부터 '77.8월까지).

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정치공사를 A건설회사가 3천만원에 도급받다 (공기는 '76.9월부터 3개월간).

자. 김제는 첨포임대업을 위해 A건설회사에 2천 5백만원에 5층 건물을 짓기로 발주하였다 (5월 10일).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 인건비 상승으로 A건설회사는 계약액 변경을 요구하여 7월 20일에 3천만원으로 수정계약체결을 하였다.

자. 리라국민학교는 동교내 기숙사가 오래되어 동기숙사 해체공사를 의뢰교차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던바 A건설회사에 2천만원에 낙찰된다.

자. '76.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공사 입찰에 응찰한 결과 1억원에 낙찰되어 '76.10월부터 착공하여 78년 4월에 완공 기록 7월에 계약을 체결하다 ('76년 7월 말일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은 1.5%당 484원임).

<부록4>

연습문제 정답 및 조사표 양식

1. 진위형

가. (X) 나. (X) 다. (O) 라. (X) 마. (O)

2. 연결형

가. a - ③	b - ⑨	c - ⑩	d - ⑬
e - ⑯	f - ⑥	g - ⑦	h - ⑪
i - ①	j - ⑫	k - ②	l - ⑤
m - ④	n - ⑧	o - ⑮	p - ⑭
나. a - ③	b - ⑤	c - ⑥	d - ②
e - ①	f - ④		
다. a - ⑥	b - ③	c - ⑨	d - ⑬
e - ②	f - ①	g - ⑤	h - ⑯
i - ④			
라. a - ⑫	b - ⑭	c - ⑪	d - ⑬
e - ①	f - ⑤	g - ⑥	h - ⑩
i - ⑯	j - ⑦	k - ⑧	l - ④
m - ②	n - ③	o - ④	p - ⑨
마. a - ②	b - ③	c - ⑤	d - ①
e - ④			

통계법의 규칙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지정통계

卷之三

12
10
8
6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외문이 있을 때에는 경계가 회의 주제가 되어 서양통계학(194-8-176)로 문의하십시오.

(후면에도 기재사 향이 있음)

국내외 배구 모공사수주액

IV . 빨주자금원자재처금계회예

※ 1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기업할 것.

(단위 : 천원)

기업사 주의사항

2. 공중별 발주자별 세분류에 특히 유의하여 기업요령서를 잘 읽고 기업한다.
 3. 벌주자가 자금 허가로 한 원자재 비는 제약당시 시기로 확정하여 수주액에 포함시키고 전설업체의 자가 전설이나 모기업·산하기업을 위한 체계로 조사해 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내공시에 있어서 월도급자가 전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 등이거나 해외공사에 있어서 월도급자가 국내 전설업체가 아닌 외국회사 등인 경우의 하도급 수주액은 수주액에 포함시킨다.
 4. 하도급공사 수주액은 원 체계으로 조사해 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내공시에 있어서 월도급자가 전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 등이거나 해외공사에 있어서 월도급자가 국내 전설업체가 아닌 외국회사 등인 경우의 하도급 수주액은 수주액에 포함시킨다.
 5. 해외 수주액은 제약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치를 기업한다.
 6. 계약별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월의 변경액만을 기입한다. 즉 증액시에는 증액분 앞에 + 기호를 하고 증액분만을,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 기호를 하고 감액분만을 기입한다. 그리고 그 배역을 바교란에 기입한다.
 7. 국내공사에서 전설업체가 아닌 월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 및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발주자별 분류기준으로 삼는다.
 8. 후면의 II, III, IV항목의 공중제분류 및 벌주체분류란은 전면의 세분류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9. 후면의 II항목에서 벌주자가 해외인 경우 벌주자명란에 벌주국가명을 기입한다.
 10. 후면의 II항목에서 예상공기란에는 몇월부터 몇월까지라고 기입한다.
 11. 후면의 II항목에서 주성선품(주업무)란에는 벌주자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의 주성선품명을 기입

III . 쟁 공 사 계 회 애

(七)

건설업동태조사표

제출 기한 : 매월 15일

(단위 : 천위)

(1976)

三

자연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발주자 및 공종분류 기입요령

1. 범주기법

○ 일부 : 중앙자원, 무, 치, 청문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의 출입 자 무치의 지침주제기자회, 출입대회 및 출입대회 등도 포함됨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유행가업체: 기업체의 운영, 업체의 경쟁력 등 주로 사업을 경쟁과 차별화에 착안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체 수 대비 분류는 차트에서 50%

을 일부 즐기며 희망하고 있다.

⁴ 이는 헌공(公卿), 한국전체, 조선총장재청, 서주 은행(銀庫), 산업, 주민, 경제기획본부 등 서울특별시 기관 부처

포장업체에 문의할 것)

여기서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국가가 자금을 투입 받아 처리하거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在當時，它已成為一個政治上發達的民族。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udy, please contact Dr. Michael J. Koenig at (314) 747-2146 or via email at koenig@dfci.harvard.edu.

200

마. 결론 유통망을 확장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늘리다. 기술사는 산업 철학, 사업에 따라 적용된다.

⁴ 이 조선왕조의 기술서는 광국전 및 경상전

○ 산업 및 서비스 이용: 도, 소매 및 음식 수탁업용, 금융보험, 부동산업 및 서비스용, 회장보관, 사회복지, 조사연구기

但當它正處於最強勢的時刻，它會突然地消失，並且永遠地消失。

다. 노예, 고지기, 아동, 여성, 노인, 노약자, 여성, 노약자, 노인, 노약자 등.

www.kci.go.kr

월 중 공사 계약 내역 표

* 1천만원 이상 공사만 기입할 것

(단위 : 천원)

1976년

월분

※ 발주자가 제조업체일 경우 발주자의 주된 제품명을
발주자명란 하단에 ()를 하고 기입하시오.

적	○증감사유
요	○계약변경내용
	○기타 참고사항

응답 또는 작성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인)	
조사자	조사원	지도원	
	(인)	(인)	

※ 이 조사표의 작성상 의문 사항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전화 직통 74-8176
교환 75-5371~5)로 문의 하십시오.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 주주통계 조사표

(1978년 월분)

사업체 번호

I. 수주액

(단위: 천원)

제출기한: 매월 15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공종별 발주자별	1. 건축						2. 토목												3. 전문직별			4. 합계 (1+2+3)
	① 주택	②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③ 공장고	④ 관공서, 학교, 병원	⑤ 기전축	⑥ 소계 건수 금액	① 치산수	② 농림교수	③ 도로항공	④ 만철도	⑤ 항공항체	⑥ 상하도수	⑦ 하도수	⑧ 토지조성, 공원, 경기장	⑨ 댐	⑩ 기설치	⑪ 기토목	⑫ 소계 건수 금액				
1. 국내공공부문	정부 01																					
	지방자치단체 02																					
	국영기업체 03																					
	기타공공단체 04																					
	계 09																					
2. 국내민간부문	음식료품 11																					
	섬유류 12																					
	화학유 13																					
	철강업 14																					
	기계류 15																					
	기타제조 16																					
	소계 77																					
3. 비제조부문	운수보관 21																					
	상업·서비스 22																					
	금융·보험 23																					
	부동산 24																					
	광업 25																					
	소계 88																					
	계 99																					
3. 국내외국기관	00																					
4. 국내합계(1+2+3)	99																					
5. 해외수주	00																					
6. 총계(4+5)	99																					

※ 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때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74-8176)으로 문의하십시오.

(후면에도 기재사항이 있음)

תְּהִלָּה בְּרִית מָנָה וְעֵדָה וְעַמְּדָה

◆ 천만원 이상의 공사만 기입할 것

(단위 : 천 원)

III. 직영공사 계획액

(단위 : 천원)

공종	공종세분류	공사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	직영공사계획

IV. 러그사모 고사대 사법자유학

(단위 : 천원)

卷之三

임시 주의사항

1. 금액은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2. 공종별 발주자별 세분류에 특히 유의하여 기입요령서를 잘 읽고 기입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기로한 원자재비는 계약당시 시가로 환산하여 수주액에 포함시키고 건설업체의 자가 건설이나 모기업·산하기업을 위한 직영공사액도 수주액에 포함시킨다.
 4. 하도급공사 수주액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내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건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 등이거나 해외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국내건설업체가 아닌 외국회사등인 경우의 하도급 수주액은 수주액에 포함시킨다.
 5. 해외 수주액은 계약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치를 기입한다.
 6.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월의 변경액만을 기입한다. 즉 증액시에는 증액분앞에 (+)기호를하고 증액분만을, 감액시에는 감액분앞에 (-)기호를 하고 감액분만을 기입한다. 그리고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7. 국내공사에서 건설업체가 아닌 원도급자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및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발주자별 분류기준으로 삼는다.
 8. 후면의 II, III, IV 항목의 공종세분류 및 발주자세분류란은 전면의 세분류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9. 후면의 II항목에서 발주자가 해외인경우 발주자명란에 발주국가명을 기입한다.
 10. 후면의 II항목에서 예상공기란에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라고 기입한다.
 11. 후면의 II항목에서 주생산품(주업무)란에는 발주자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의 주생산품명을 기입하고 비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명을 기입한다.

작성자 소속 성명

명
속
화번호

조사원성명 (이)

지도 원성면

건설업 주주동계 조사표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 번호

1.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일련 번호	① 공 사 명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② 세 공 분 종 류 명	※ 공 분 (부호) 종 류	③ 발 주 자 명	④ 세 분 류 발 주 자 명	※ 발 주 자 분 류 (부 호)	⑤ 수 주 액								⑥ 계 약 일 자	⑦ 착 공 예 정 일 자	⑧ 완 공 예 정 일 자	※ 공 사 기 간 (개월)		
							합 계				계약금액									
천 억	백 억	십 억	역 천만 백만원	천 억	백 억	십 억	역 천만 백만원	천 억	백 억	십 억	역 천만 백만원	천 억	백 억	십 억	역 천만 백만원	천 억	백 억	십 억	역 천만 백만원	
도 급 공 사 계 약 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자 기 공 사 계 획 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세분류 공종명 및 부호]		[세분류발주자명 및 부호]	
1 건축	2 토목	3 전문직공사	
1 국내공공	2 국내민간	3 국내외국기관	4 해외
101 주택	201 차산·차수	206 상·하수도	연관·난방·도장·도배
102 사무실·점포·숙박 시설·오락장	202 농림·수산	207 발전·옥외전기 및 전화공사	101 정부 <u>21 제조업</u> <u>22 비제조업</u>
103 공장·창고	203 도로·교량	211 음식료품	102 지방자치단체
104 관공서·학교·병원	204 항만·공항	208 토지조성·공원·경기장	221 운수·보관
105 기타(체육관, 군악사동)	205 철도·궤도	212 석유류	103 국영기업체
		209 댐	222 상업·서비스
		213 화학석유	104 기타공공단체
		210 기계설치	214 철강업
		211 기타	215 기계공업
			216 기타제조업
			223 부동산
			224 광업
			225 기타비제조업

【가입시 주의사항】

- ※한은 기입하지 않는다.
 - 해당되는 풍사의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티조서표를 사용하고 매수를 기입한다.
 - 원화표시 금액 단위는 삼십오입하여 매판 천단위로 한다.(불과표시는 원천단위)
 - 도급 풍사계약에는 할주차와 계약한 도급제의 내용을 기입한다. 국내타간 설립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수액은 조사내장에서 제외하나, 하도급 받은 경우 일정자료도 회계 전설업체나 국내종합부동산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내장이 된다. 도급 풍사계약에는 할주차 편차에 차금회복을 계약 당시의 청탁으로 확정기입된다.
 - 자기공사는 계획작성지에 경종풍사비를 기입하되, 계획청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허가증의 예정공사비를 조사한다. 여기서 자기공사원 조사내장전설업체 그리고 도급 또는 학제기밀을 위한 자가공사를 말한다.
 - 해외건설공사 계약에는 원화 및 불화(\$)로 기입하여 원화환율은 한국은행이 시행한 징후기준을 적용해자한다. 해외공사 계약액의 경우 할주차금 천자책 예상 포함하지 않는다.
 - 세분류 할주차별 및 공중영은 조사표 하단의 내용에 따라 분류기입한다.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 할주차(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방위와 관련된 결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명은 “○○ 풍사”로, 만수기명은 정부(국군부대일 경우도 포함) 또는 국내 국적기관(유엔군부대일 경우)으로 기입한다.
 -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행일의 증감액이나 기입하여 증액시에는 (+) 기호를, 감액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분 앞에 표시하고 그 내역을 비교나라에 기재한다.
 - 단 한장의 수수액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번히 유의하되, 단점 누락되있을 경우에는 누락분을 즉시 보고하고 무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조사서 기입보고하고 그 내역을 비교나라에 기재한다.

작성일자: 197년 월 일

차업체명

작성자주제

작성자설명 :

卷之三

총 삼단 단체

卷之三

卷之三十一

卷之三十一

338-340

卷之三十一

제출기한: 매월 15일

(1987년 월분)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표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여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 번호

—

1.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일련 번호	① 공 사 명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② 세 공 분 류 명	※ 공 분 종 류 (부호)	③ 발 주 자 명	④ 세 분 류 발 주 자 명	※ 발 주 자 분 류 (부호)	⑤ 수 주 액	계약금액						⑥ 계 약 일 자	⑦ 착 공 예 정 일 자	⑧ 완 공 예 정 일 자	※ 공 사 기 간 (개월)				
								합 계			계약금액										
								청 액	백 만 원	실 액	청 액	백 만 원	실 액	청 액	백 만 원	실 액	청 액	백 만 원	실 액		
도 급 공 사 계 약 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자 기 공 사 계 획 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전	99	합 계																X	X	X	X

(세분류 공종명 및 부호)

1. 건 축	2. 토 목	3. 전문직공사	1. 국 내 공 공	2. 국 내 민 간	3. 국내외국기관	
101 주택 102 사무실·점포·숙박 시설·오락장 103 공장·창고 104 관공서·학교·병원 105 기타(체육관, 군막사 등)	201 치산·치수 202 농립·수산 203 도로·교량 204 항만·공항 205 철도·궤도 206 상·하수도 207 발전·옥외전기 및 전화공사 208 토지조성·공원·경기장 209 엔 210 기계설치 211 기타	연판·난방·도장·도배 옥내전기공사·석공·미 장·목공·지붕잇기·함 석·구조강건립·방수· 방습·내화·기타(굴뚝· 온돌·비계·창호·공사 등)	101 정부 102 지방자치단체 103 국영기업체 104 기타공공단체	21 제조업 211 음식료품 212 섬유류 213 화학·석유 214 철강업 215 기계공업 216 기타제조업	22 비제조업 221 운수·보관 222 상업·서비스 223 부동산 224 광업 225 기타비제조업	300 국내외국기관 400 해외